

제2026-1호 2026년 1월 5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5-571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5-572호 | 여수시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안) |
| ○ 여수시 고시 | 제2025-57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변경)승인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1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2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3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4호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5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6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여수시 고시 | 제2026-7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삼산면 변촌-장촌 도로확포장) |
| ○ 여수시 고시 | 제2026-8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시립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9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돌산읍 백촌-거북산도로 진출입로 개설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10호 |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산단로 삼동-남수 확포장 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11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주삼동 장곡-봉계저수지) |
| ○ 여수시 고시 | 제2026-1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상례동-원봉두 시도11호선 도로개설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13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소라면 달천마을 일원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 |
| ○ 여수시 고시 | 제2026-15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죽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공 고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890호 | 여수시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 개최결과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04호 |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07호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마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반송분 공사총괄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09호 |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옥적리 17-3번지 외 2필지)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10호 | 여수 소재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정정)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11호 | 여수 소재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전기) 모집공고(정정)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12호 | 여수 소재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소방) 모집공고(정정)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13호 | 여수 소재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정정)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14호 | 여수 소재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소방) 모집공고(정정)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15호 | 여수 소재지구 A4블록 주택건설사업 감리자(전기) 모집공고(정정) |
| ○ 여수시 공고 | 제2025-3921호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사총괄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원료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3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원료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6호 |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어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8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원료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10호 | 여수시 도서관운영과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5호 | 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3차)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6호 | 섬섬여수3호 기관·장비 등 일괄매각 전자입찰 공고(6차) |
| ○ 여수시 공고 | 제2026-29호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
| ○ 여수시 공고 | 제2026-32호 |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 행정예고 |

- 여수시 공고 제2026-33호 제60회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4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36호 도로지정 공고[화정면 백야리 253-13번지]
- 여수시 공고 제2026-37호 도로지정 공고[화정면 백야리 253-5번지 외1필지]

읍·면·동

- 화정면 공고 제2025-29호 여수시 화정면 이장 모집 재공고(5개마을)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31.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영우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처사유	비고
전월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죽물리 1266-4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원죽길 2-44	2025.021	건축물 신축	2025.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질 고려	
전월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죽물리 1266-9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원죽길 2-54	2025.021	건축물 신축	2025.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질 고려	
전월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덕양리 1050-4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덕양상거리길 28	2025.021	건축물 신축	2025.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질 고려	
전월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나전리 889-2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용재이길 86-42	2025.021	건축물 신축	2025.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질 고려	
전월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나전리 885-5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용재이길 86-105	2025.021	건축물 신축	2025.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질 고려	

여수시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수시 한려·동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여수시장

1 계획의 개요(변경)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상생으로 새로이 비상하는 百年再生	일반근린형	209.72	2019년 ~ 2026년
	사업위치	여수시 공화동 480-4번지 일원	사업면적	132,627㎡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 여수시 및 한려·동문지구 주민협의체 등			
사업 필요성	· 해당 지역은 엑스포 인접지구이나 집창촌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와 원도심 지역 쇠퇴가 지속하여 주거환경, 안전시설 등의 주거여건이 열악하며 인접한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관리 차원의 새로운 재생사업이 필요함			
사업내용 및 효과	· 청소년자활거점마련(돈옴주택, 인큐베이티 센터, 여성작가 레지던시 공간) 조성, 공공주차장 조성, 여행자 테마거리 조성, 집수리(외부)지원 사업, 어울림 센터 조성, 주민역량 강화 등			
재원조달방안	· 국비 80억원, 지방비 129.36억원 등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 마중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활성화계획도(변경)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변경 없음)

비전	살기 좋은 마을조성과 역사, 문화, 예술, 지역특화 자산을 이용한 경제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상생으로 새로이 비상하는 百年再生"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靜] : '부정적 이미지 탈피' · 중[重] : '창업 지원을 통한 모두를 어우르는 마을 구축' · 여[如] : '함께 잘사는 마을 구축' · 산[山] : '공동체 발전은 마을의 발전'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억원)
마중물사업	청소년 돌봄여건 조성	청소년 돌봄주택 조성	79.9
		인큐베이팅 센터	
	정주여건개선	여성작가 레지던시 공간조성	73.33
		노후주택 개량 및 공·폐가 개선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생활기반 SOC	20.26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거리 조성	
	공동체 활성화	한려 마켓	36.23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거북선, 거북이 도서관, 마을공방, 마을광장)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공모사업			
지자체사업	골목보행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2.5
		소방도로개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길 조성	
		CCTV 및 보안등 설치	
	창업지원 프로그램	노후주택정비사업	1.2
		청년창업지원	4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마을기업 육성	4
		우/오수(하수)관로정비	3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도시농업지원	0.3
		공공주차장 조성	4.5
		쌈지공원 조성	0.2
		무인택배함 설치	0.4
	공동체문화 거점조성사업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0.2
		어울림센터 조성	70
		마을공동체센터조성	2
		마을쉼터 조성	0.3
		체험장 및 기념품 센터 조성	4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8
	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광장 조성	7
		공동체발굴 육성사업	2
주민공모사업		1	
주민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교육	2	
문화복지사업	마을문화교실운영	1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7.5	
민간투자사업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거환경정비		1,835

나. 파급효과(변경 없음)

구분	사업명	파급효과
청소년 돈움여건 조성	청소년 돈움주택 조성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탈선 및 사회문제 해소 ·인큐베이팅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교육을 통한 사회 진입 발판 마련
	인큐베이팅 센터	·취·창업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청년 창업지원 ·교육 및 치료를 통한 탈선매매여성들의 사회진출 발판 마련 ·마을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의 경제력 향상
	여성작가 레지던시 공간조성	·레지던시 공간 운영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활동 영역 확대 ·미술교육 및 멘토링 등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함양, 청소년의 가치관 향상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마을 경관개선 노력
정주여건 개선	노후주택 개량 및 공·폐가 개선사업	·노후주택 정비 및 공·폐가 정비를 통한 지역의 경관 개선 ·주민 공동 참여를 통한 텃밭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
	생활기반SOC	·골목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심거리 조성 ·주차편의 제공으로 외부 방문객 진입 유도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강화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거리 조성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방문객의 불거리 제공 ·스토리텔링책자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지역의 역사·문화 홍보 ·축제를 통한 상품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려마켓	·특성있는 한려마켓 운영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거리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마켓 운영 으로 수익 창출 증대
	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거점 공간 구축으로 도시재생사업 참여도 제고 ·다양한 주민활동 거점 조성으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마을리더 및 마을활동가 발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주민 참여로 주민주도의 지속적 도시 재생사업 진행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억원)

기반시설 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규모	사업내용	비고
사회 복지시설	한려 어울림센터	14.25	공화동 1063-3 일원	354.14㎡	·주민들의 회의 등 마을 운영을 위한 거점공간 활용	당초
				310.35㎡		변경
		1.2	공화동 1063-3 일원	48㎡	·VR,AR을 이용한 전시체험프로그램 공간 조성	당초
				91.65㎡		·도보 여행자를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 조성

⑤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변경 없음)

가. 2,173.82억(마중물 209.72, 지자체 129.1, 민간투자 1,835)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비고
			계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타	
						시도비	시구군비				
마중물사업	청소년 돌봄여건 조성	청소년 돌봄주택 조성	79.9	36.00	6.31	1.07	28.62	-	-	-	
		인큐베이팅 센터		21.57	6.88	1.27	13.43				
		여성작가 레지던시 공간조성		22.33	4.59	2.36	15.38	-	-	-	
	정주여건 개선	노후주택 개량 및 공·폐가 개선사업	73.33	27.97	6.63	1.00	20.14	-	-	0.20	
		생활기반 SOC		45.36	26.85	4.37	14.15	-	-	-	
	골목경제 활성화	이순신 난중일기 테마거리 조성	20.26	14.96	8.07	1.05	5.68	-	-	0.16	
		한려 마켓		5.30	2.81	0.36	2.13	-	-	-	
	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동이용시설 (거북선, 거북이 도서관, 마을공방, 마을광장)	36.23	24.91	14.58	1.09	9.24	-	-	-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공모사업		6.10	3.29	0.44	2.37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5.22	-	-	5.22	-	-	-	
① 소 계			209.72	209.72	80	13	116.36	-	-	0.36	
지자체사업	골목보행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2.5	2.5	-	-	2.5	-	-	-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길 조성	2	2	-	-	2	-	-	-	
		CCTV 및 보안등 설치	2	2	-	-	2	-	-	-	
		노후주택정비사업	1.2	1.2	-	-	1.2	-	-	-	
	창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창업지원	4	4	-	-	4	-	-	-	
		마을기업 육성	4	4	-	-	4	-	-	-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우/오수(하수)관로정비	3	3	-	-	3	-	-	-	
		도시농업지원	0.3	0.3	-	-	0.3	-	-	-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공공주차장 조성	4.5	4.5	-	-	4.5	-	-	-	
		쌈지공원 조성	0.2	0.2	-	-	0.2	-	-	-	
		무인택배함 설치	0.4	0.4	-	-	0.4	-	-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0.2	0.2	-	-	0.2	-	-	-	
	공동체문화 거점조성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70	70	-	-	70	-	-	-	
		마을공동체센터조성	2	2	-	-	2	-	-	-	
		마을쉼터 조성	0.3	0.3	-	-	0.3	-	-	-	
		체험장 및 기념품 센터 조성	4	4	-	-	4	-	-	-	
		청소년문화센터 조성	8	8	-	-	8	-	-	-	
	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광장 조성	7	7	-	-	7	-	-	-	
		공동체발굴 육성사업	2	2	-	-	2	-	-	-	
	주민역량강화 문화복지사업	주민공모사업	1	1	-	-	1	-	-	-	
주민역량강화교육		2	2	-	-	2	-	-	-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마을문화교실운영	1	1	-	-	1	-	-	-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7.5	7.5	-	-	7.5	-	-	-		
② 소 계			129.1	129.1	-	-	129.1	-	-	-	
민간 투자 사업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주거환경정비		1.835	1.835	-	-	-	-	1,835	-	
	③ 소 계			1.835	1.835	-	-	-	-	1,835	
합계 (①+②+③)			2,173.82								

⑥ 예산 집행 계획(변경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합계(①+②+③)		217,382	2,637	3,797	3,730	2,469	2,536	473	201,740	
마중물 사업	소 계 ①	20,972	2,287	2,987	1,920	1,159	2,536	473	9,610	
	국비 및 지방비	20,936	2,283	2,973	1,906	1,155	2,536	473	9,610	
	기 타	36	4	14	14	4	-	-	-	
지자체 사업	소 계 ②	12,910	350	810	1,810	1,310	-	-	8,630	
	지방비	12,910	350	810	1,810	1,310	-	-	8,630	
민간 투자 사업	소 계 ③	183,500	-	-	-	-	-	-	183,500	
	기 타	183,500	-	-	-	-	-	-	183,500	

⑦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⑧ 관련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 2025. 12. 31. ~ 2026. 1. 30.(30일간)

나.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재생과(전남 여수시 응천동 1809-1)

다. 연 락 처 : 담당자 최지용 ☎061-659-4560

여수시 고시 제2025 - 5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기간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점용·사용 목 적	승인받은 자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전	변경후
2021-66 (2021.8.30.)	여수시 소호동 522-1번지일원	13,971㎡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따른 오탁방지막 설치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공영개발과)	2021.8.30. ~ 2025.12.31.	2021.8.30. ~ 2026.12.31.

2025. 12. 31.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25-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833, 소로 3-1216)사업
 - 나. 명 칭: 삼산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1,002㎡
 - 나. 규 모: L=158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lceil 기정: 2020. 8.20.~2025.12.31.
 \lfloor 변경: 2020. 8.20.~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삼산면 거문리	128-24	대	6	6		여수시				
2	삼산면 거문리	143-7	도	9	9		국토교통부				기정
2	삼산면 거문리	143-7	도	9	9		여수시				변경
3	삼산면 거문리	128-25	대	54	54		여수시				
4	삼산면 거문리	128-28	대	31	31		여수시				
5	삼산면 거문리	128-26	대	83	83		여수시				
6	삼산면 거문리	128-22	대	137	122		여수시				
7	삼산면 거문리	126-2	대	72	72		경찰청				기정
7	삼산면 거문리	126-2	대	72	72		여수시				변경
8	삼산면 거문리	125-10	전	525	476		여수시				
9	삼산면 거문리	113-5	임	88	78		전라남도 (교육감)				기정
9	삼산면 거문리	113-5	임	88	78		여수시				변경
10	삼산면 거문리	125-12	대	37	37		여수시				
11	삼산면 거문리	123-3	대	34	34		여수시				
계					1,002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묘도동 20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역사공원 217)사업
 - 나. 명 칭 :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역사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29,655.9㎡
 - 나. 규 모: 관리시설(4,886.5㎡), 휴양시설(337.9㎡), 교양시설(6,751.9㎡), 편익시설(879.8㎡), 기타(16,799.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0. 4.16.~2025.12.31.
└변경: 2020. 4.16.~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3), 관광과(☎061-659-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별	소유자	
							성명	주소
	합 계	2필지		29,655.9	29,655.9			
1	여수시 묘도동	2027	공원	29,635.5	29,635.5	공유지	여수시	-
2	"	2027-1	도로	20.4	20.4	공유지	여수시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신월동 177-59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571)사업
 - 나. 명 칭 : 신월동 봉양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적 : 1,832㎡
 - 나. 규모 : L=194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11.13.~2025.12.31.**
└변경: 2018.11.13.~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신월	177-59	잡	1	1		여수시청				
2	신월	177-58	잡	4	4		여수시청				
3	신월	177-56	잡	289	289		여수시청				
4	신월	177-54	도	18	18		여수시청				
5	신월	177-61	도	382	49		여수시청				
6	신월	177-60	대	5	5		여수시청				
7	신월	177-51	대	12	12		여수시청				
8	신월	177-6	도	10	14		여수시청				
9	신월	177-53	대	44	44		여수시청				
10	신월	176-2	도	3	3		여수시청				
11	신월	176-4	대	22	22		여수시청				
12	신월	175-3	도	7	7		여수시청				
13	신월	175-4	대	80	80		여수시청				
14	신월	175-5	대	10	4		여수시청				
15	신월	174-22	대	16	16		여수시청				
16	신월	174-21	답	42	42		여수시청				
17	신월	174-20	대	17	17		여수시청				
18	신월	174-19	대	40	40		여수시청				
19	신월	174-18	답	23	23		여수시청				
20	신월	166-1	대	63	63		여수시청				
21	신월	165-3	도	7	7		여수시청				
22	신월	164-5	대	67	67		여수시청				
23	신월	128-2	도	3	3		여수시청				
24	신월	128-4	대	50	50		여수시청				
25	신월	127-2	대	29	29		여수시청				
26	신월	129	도	181	8		여수시청				
27	신월	103	도	8,849	199		여수시청				
28	신월	117-4	대	3	3		여수시청				
29	신월	116-32	도	56	56		여수시청				
30	신월	116-30	임	121	121		여수시청				
31	신월	116-55	임	43	33		여수시청				
32	신월	116-54	전	135	135		여수시청				
33	신월	120-52	도	119	3		여수시청				
34	신월	120-2	대	172	1	임소동	여수시 신월동 120	최삼례	여수시 봉강동 418	근저당	
						김길래	여수시 신월동 120				
35	신월	124-4	도	6	6		여수시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6	신월	125-3	대	4	4		여수시청				
37	신월	125-4	도	25	25		여수시청				
38	신월	126-2	도	10	10		여수시청				
39	신월	126-3	대	1	1		여수시청				
40	신월	1800-2	도	289	289		여수시청				
41	신월	1800-3	도	29	29		여수시청				
계				11,287	1,83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1	113	10	국지 도로	66	대1-9 월산리 1211-1답	자연취락 지구5 월산리 1176답	일반 도로		여고-193 06.12.27.	진입로 (하취 지구)
폐지	소로	1	114	10	국지 도로	294	대1-3 취적리 722-3도	자연취락 지구 6 취적리 792-2도	일반 도로		여고-193 06.12.27.	진입로 (봉정 지구)
폐지	소로	1	117	10	국지 도로	608	대1-3 취적리 270-8도	자연취락 지구 7 취적리 1393-3도	일반 도로		여고-193 06.12.27.	진입로 (내동 지구)

나.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13	-	· 소로 1-113호선 폐지	· 장기간 미개설된 상태로 도로 집행계획이 없어 폐지
소로1-114	-	· 소로 1-114호선 폐지	· 장기간 미개설된 상태로 도로 집행계획이 없어 폐지
소로1-117	-	· 소로 1-117호선 폐지	· 장기간 미개설된 상태로 도로 집행계획이 없어 폐지

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73	노외주차장	화정면 백야리 68-1번지 일원	804	감)804	-	여고-67호 09. 5.13.	

라.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73	노 외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A=804㎡	· 주차장 지정 이후 장기미집행 상태로 주변 토지이용 및 면사무소 이전 등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낮아 폐지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 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장증설용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
 - 가. 성 명: DL케미칼(주) 김종현
 - 나. 주 소(변경): ㄱ 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26층
ㄴ 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 7층(마곡동, 원그로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합성유 제조공장 및 지원시설 등 부지조성
 - 나. 사업의 개요: 123,667m²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여수시 월하동 16번지 일원
 - 나. 면 적: 123,667m²
5. 사업시행기간(변경): ㄱ 지정: 2016. 6.24.~2025.12.31.
ㄴ 변경: 2016. 6.24.~2026.12.31.
6.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없음): 불입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8. 국·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게재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게재생략
11.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659-4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월하동	1-8	장	1,069	1,069	비틀라카본 코리아(주)	전라남도 여주시 여수산단2로 46-101(월하동)				
2	월하동	16	임	111,184	111,184	DL케미칼 (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3	월하동	16-2	임	3,224	3,224	여천앤씨씨 (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제6층 제바-6호(공평동, 센 트로폴리스)	한국산업은행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근저당 권설정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권설정	
								(주)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1-1	근저당 권설정	
								(주)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권설정	
4	월하동	17	도	48,466	8,190	국 (국토 교통부)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읍촌면 월산리 1442-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66, 광장: 교통광장 39)사업
 - 나. 명 칭: 국도17호선~월산교차로(시도16호선) 도로확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도로 및 광장 9,416㎡
 - 나. 규 모: L=323m, B=18.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도로과)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기간(변경): ㄱ 변경 2018. 3. 8. ~ 2025.12.31.
ㄴ 변경 2018. 3. 8.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1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42-18	도	580	580		여수시				
2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43-4	도	4	4		여수시				
3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43-2	도	19	19		여수시				
4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91-5	도	407	407		여수시				
5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39-3	도	271	271		여수시				
6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39-4	도	9	9		여수시				
7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44-1	도	152	152		여수시				
8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44-3	도	106	106		여수시				
9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701-1	도	578	578		여수시				
10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50-23	도	250	250		여수시				
11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56-3	도	208	208		여수시				
12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35-4	도	448	448		여수시				
13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52-1	도	86	86		여수시				
14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52-3	도	10	10		여수시				
15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5	도	46	46		여수시				
16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9	도	68	68		여수시				
17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387-12	도	32	32		여수시				
18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387-16	도	136	136		여수시				
19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387-21	도	1	1		여수시				
20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387-18	도	58	58		여수시				
21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37-5	도	73	73		여수시				
22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37-7	도	20	20		여수시				
23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1437-8	도	14	14		여수시				
24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4	도	115	115		여수시				
25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8	도	78	78		여수시				
26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6	도	1	1		여수시				
27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21	도	1	1		여수시				
28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20	도	50	50		여수시				
29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2	도	46	46		여수시				
30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8	도	25	25		여수시				
31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3	도	51	51		여수시				
32	울진읍 울월초산면리	677-17	도	6	6		여수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33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37-9	도	91	91		여수시				
34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37-4	도	7	7		여수시				
35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36-2	도	144	144		여수시				
36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4-9	도	1	1		여수시				
37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4-6	도	3	3		여수시				
38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4-7	도	2,046	2,046		여수시				
39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4-8	도	8	8		여수시				
40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11	도	39	39		여수시				
41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25	도	1,091	1,091		여수시				
42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23	도	22	22		여수시				
43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3	도	5	5		여수시				
44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10	도	28	28		여수시				
45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14	철	28	28		국토교통부				
46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15	철	7	7		국토교통부				
47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2	도	7	7		여수시				
48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87-11	도	27	27		여수시				
49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87-13	도	9	9		여수시				
50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87-20	도	19	19		여수시				
51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87-15	도	25	25		여수시				
52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9	도	5	5		여수시				
53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20	도	130	130		여수시				
54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12	도	1	1		여수시				
55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07-13	도	3	3		여수시				
56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10	도	87	87		여수시				
57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21	도	21	21		여수시				
58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18	도	5	5		여수시				
59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6-22	도	18	18		여수시				
60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677-1	도	492	492		여수시				
61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34-1	도	43	43		여수시				
62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653-7	도	56	56		여수시				
63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678-3	도	53	53		여수시				
64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87-19	도	11	11		여수시				
65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62-27	도	86	86		여수시				
66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13-6	도	12	12		여수시				
67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363-8	도	24	24		여수시				
68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06-18	도	3	3		여수시				
69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319-10	도	70	70		여수시				
70	울진읍 울진초등학교	1421-1	도	10	10		여수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 지		총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71	울춘면 월산리	1450-22	도	70	70		여수시				
72	울춘면 월산리	1451-18	도	13	13		여수시				
73	울춘면 월산리	1412-1	도	30	30		여수시				
74	울춘면 월산리	1426-24	도	4	4		여수시				
75	울춘면 월산리	1427-1	도	23	23		여수시				
76	울춘면 월산리	1412-2	도	153	153		여수시				
77	울춘면 월산리	1413-1	도	167	167		여수시				
78	울춘면 월산리	1406-10	도	11	11		여수시				
79	울춘면 월산리	1406-16	도	32	32		여수시				
80	울춘면 월산리	1406-27	철	4	4		국토교통부				
81	울춘면 월산리	1406-25	답	10	10		여수시				
82	울춘면 월산리	1406-15	도	16	16		여수시				
83	울춘면 월산리	1406-24	도	28	28		여수시				
84	울춘면 월산리	1406-28	도	119	119		여수시				
85	울춘면 월산리	1406-29	도	50	50		여수시				

○ 지장물조서(변경)

- 철거완료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11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1456)사업
 - 나. 명 칭 : 삼산면 변촌~장촌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12,662m²
 - 나. 규 모: L=1,105m B=7.0~9.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기간(변경): **기정: 2020.10. 8.~2025.12.31.**
변경: 2020.10. 8.~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5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자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삼산면 서도리	1424-1	도	55	55		여수시				
2	삼산면 서도리	1424-2	도	105	105		여수시				
3	삼산면 서도리	1424-5	도	54	54		여수시				
4	삼산면 서도리	1424-6	도	4	4		여수시				
5	삼산면 서도리	1424-7	도	206	206		여수시				
6	삼산면 서도리	1424-1 1	도	14	14		여수시				
7	삼산면 서도리	1424-1 2	도	7	7		여수시				
8	삼산면 서도리	1424-1 3	도	20	20		여수시				
9	삼산면 서도리	1204-3	전	397	397		여수시				
10	삼산면 서도리	1204-2	전	45	45		여수시				
11	삼산면 서도리	1203-2	전	440	440		여수시				
12	삼산면 서도리	1201-2	임	2	2		여수시				
13	삼산면 서도리	산20-2	임	22	22		여수시				
14	삼산면 서도리	1202-2	전	259	259		여수시				
15	삼산면 서도리	1200-3	전	28	28		여수시				
16	삼산면 서도리	1200-2	전	3	3		여수시				
17	삼산면 서도리	1246-2	전	148	148		여수시				
18	삼산면 서도리	1199-2	전	1	1		여수시				
19	삼산면 서도리	1199-3	전	267	267		여수시				
20	삼산면 서도리	1256-3	전	96	96		여수시				
21	삼산면 서도리	1256-2	잡	9	9		여수시				
22	삼산면 서도리	1380-1	전	182	182		여수시				
23	삼산면 서도리	1379-3	묘	33	33		여수시				
24	삼산면 서도리	1379-2	전	10	10		여수시				
25	삼산면 서도리	1197-7	전	21	21		여수시				
26	삼산면 서도리	1381-3	전	118	118		여수시				
27	삼산면 서도리	1381-4	전	708	708		여수시				
28	삼산면 서도리	1425-1	구	41	41		여수시				
29	삼산면 서도리	1425-2	구	16	16		여수시				
30	삼산면 서도리	1425-3	구	160	160		여수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31	삼산면 서도리	1381-8	전	12	12		여수시				
32	삼산면 서도리	1381-9	전	2	2		여수시				
33	삼산면 서도리	1381-10	전	1	1		여수시				
34	삼산면 서도리	1195-9	답	1	1		여수시				
35	삼산면 서도리	1195-8	전	66	66		여수시				
36	삼산면 서도리	1193-1	전	28	28		여수시				
37	삼산면 서도리	1383-3	전	7	7		여수시				
38	삼산면 서도리	1190-4	전	318	318		여수시				
39	삼산면 서도리	1192-2	전	45	45		여수시				
40	삼산면 서도리	1188-5	전	471	471		여수시				
41	삼산면 서도리	1187-2	임	95	95		여수시				
42	삼산면 서도리	1186-1	전	40	40		여수시				
43	삼산면 서도리	1164-10	잡	99	99		해양수산부				
44	삼산면 서도리	1164-8	잡	706	706		해양수산부				
45	삼산면 서도리	1164-11	잡	10	10		여수시				
46	삼산면 서도리	1164-7	도	2,210	2,210		해양수산부				
47	삼산면 서도리	1142-11	임	11	11		여수시				
48	삼산면 서도리	1142-9	임	25	25		여수시				
49	삼산면 서도리	1142-3	임	53	53		여수시				
50	삼산면 서도리	1439-1	구	14	14		여수시				
51	삼산면 서도리	1112-1	임	21	21		여수시				
52	삼산면 서도리	1111-4	전	10	10		여수시				
53	삼산면 서도리	1111-3	전	10	10		여수시				
54	삼산면 서도리	1440-1	도	22	22		여수시				
55	삼산면 서도리	1378-1	전	1	1		여수시				
56	삼산면 서도리	1188-4	전	1	1		여수시				
57	삼산면 서도리	1175-1	임	7	7		여수시				
58	삼산면 서도리	1175-2	임	4	4		여수시				
59	삼산면 서도리	1142-10	임	1	1		여수시				
60	삼산면 서도리	1111-5	전	3	3		여수시				
61	삼산면 서도리	1112-2	임	10	10		여수시				
62	삼산면 서도리		공유수면		2,910						
63	삼산면 서도리		미대장		1,977						
합계					12,662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응천동 1865-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응천공원)사업
 - 나. 명 칭 : 여수시립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A=4,895\text{m}^2$
 - 나. 규 모 : 소로 1-2호선 $L=16\text{m}$, $B=11\text{m}$, 소로 3-84호선 $L=281\text{m}$, $B=5.0\text{m}$, 소로 3-86호선 $L=190\text{m}$, $B=4.5\text{m}$, 녹지 $A=2,190\text{m}^2$ (원상복구)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1.11.11.~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문화유산과(☎061-659-4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여수시 웅천동	1865-1	공	335,644	4,895		여수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00-9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57호선, 소로2-1471호선, 소로3-1150호선)사업

나. 명 칭 : 돌산읍 백초~거북선대교 진출입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 9,496㎡

나. 규 모 : L=425m, B=4~9.5m

- 중로1-57호선 : L=120m, B=4m

- 소로2-1471호선 : L=80m, B=7.5~9.5m

- 소로3-1150호선 : L=205m, B=5.0~6.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21. 1. 7.~2025.12.31.**

변경: 2021. 1. 7.~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면	리명	지번				주소	성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합계						9,496						
1	돌산	우두	700-9	도	26,898	2,707		국토교통부				
2	돌산	우두	산309-3	도	1,655	67		국토교통부				
3	돌산	우두	722-17	전	91	91		국토교통부				
4	돌산	우두	719-96	전	303	303		여수시				
5	돌산	우두	719-97	전	51	51		여수시				
6	돌산	우두	719-98	전	405	405		여수시				
7	돌산	우두	719-99	임	340	340		여수시				
8	돌산	우두	719-100	전	566	566		여수시				
9	돌산	우두	719-23	전	139	139		여수시				
10	돌산	우두	719-101	전	613	613		여수시				
11	돌산	우두	719-102	전	13	13		여수시				
12	돌산	우두	719-103	전	62	62		여수시				
13	돌산	우두	719-104	전	34	34		여수시				
14	돌산	우두	719-105	전	2	2		여수시				
15	돌산	우두	719-106	전	226	226		여수시				
16	돌산	우두	719-107	전	41	41		여수시				
17	돌산	우두	719-108	전	64	64		여수시				
18	돌산	우두	719-109	전	620	620		여수시				
19	돌산	우두	719-110	전	16	16		여수시				
20	돌산	우두	719-111	임	4	4		여수시				
21	돌산	우두	719-112	임	173	173		여수시				
22	돌산	우두	719-113	전	16	16		여수시				
23	돌산	우두	719-114	임	864	864		여수시				
24	돌산	우두	764-39	임	255	255		여수시				
25	돌산	우두	764-41	도	474	474		여수시				
26	돌산	우두	764-40	임	42	42		여수시				
27	돌산	우두	산309-103	임	37	37		여수시				
28	돌산	우두	산309-104	임	518	518		여수시				
29	돌산	우두	산309-60	임	595	595		여수시				
30	돌산	우두	산309-105	임	89	89		여수시				
31	돌산	우두	산312-1	임	69	69		여수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 2, 같은 법률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률 제2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산단로(삼동~남수)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1(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국가산단 진입구 병목구간 정체로 인한 출·퇴근시 불편해소를 위함
 - 나. 사업의 개요: 도로개설 26,730㎡(L=0.7km, B=34m)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여수시 월하동 562-4번지 일원
 - 나. 면 적: ㄱ 당초: 26,730㎡
ㄴ 변경: 26.723.1㎡
5. 사업시행기간(변경): ㄱ 당초: 2014.12. 2.~2025.12.31.
ㄴ 변경: 2014.12. 2.~2026.12.31.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합계				55,368	26,730						당초
				44,085.7	26,723.1						변경
1	월하	562-4	도	2,760	245		국토교통부				
2	월하	산94-7	도	258	258		국토교통부				
3	월하	561-6	도	296	296		국토교통부				변경
4	월하	560	도	4,524	3,852		국토교통부				당초
4	월하	560-1	도	3,847	3,847		국토교통부				변경
5	월하	561-5	도	194	194		국토교통부				
6	월하	563-7	도	379	379		국토교통부				
7	월하	563-5	도	2	2		국토교통부				
8	월하	95-2	도	2,777	2,777		국토교통부				당초
8	월하	산95-2	도	2,777	2,777		국토교통부				변경
9	월하	582-4	도	1,530	1,530		국토교통부				
10	월하	840-19	구	140	140		국토교통부				
11	월하	584-4	도	7	7		국토교통부				
12	월하	585-3	도	195	195		국토교통부				
13	월하	841-17	도	195	195		국토교통부				
14	월하	587-4	도	342	342		국토교통부				
15	월하	586-3	도	710	710		국토교통부				
16	월하	840-15	구	195	147		국토교통부				당초
16	월하	840-20	구	147	147		국토교통부				변경
17	월하	640-1	도	169	169		국토교통부				
18	월하	643-5	도	804	804		국토교통부				
19	월하	645-3	도	10	10		국토교통부				
20	월하	778-3	도	2,683	2,604		국토교통부				
21	월하	830-2	도	66	38		국토교통부				
22	월하	562-8	도	121	33		국토교통부				
23	월하	산94-6	임	64	64		국토교통부				
24	월하	561-7	도	6	6		국토교통부				
25	월하	561-1	도	13	13		국토교통부				
26	월하	562-32	도	892	892		국토교통부				
27	월하	563-8	도	225	225		국토교통부				
28	월하	563-2	도	86	86		국토교통부				
29	월하	563-10	도	51	51		국토교통부				
30	월하	562-28	도	194	194		국토교통부				
31	월하	산97-2	도	198	198		국토교통부				
32	월하	562-30	도	941	941		국토교통부				
33	월하	584-5	잡	244	244		국토교통부				
34	월하	644-3	도	6	6		국토교통부				
35	월하	640-4	도	45	45		여수시				
36	월하	645-1	도	22	22		여수시				
37	월하	1163	도	5,346	56		여수시				
38	월하	1142-1	도	804	27		여수시				당초
38	월하	1142-1	도	804.5	27		여수시				변경
39	월하	1141	도	1,766	470		여수시				당초
39	월하	1141	도	1,766.3	470		여수시				변경
40	월하	582-20	도	96	96		여수시				
41	월하	582-18	도	637	637		여수시				
42	월하	582-17	도	137	137		여수시				
43	월하	582-19	도	110	110		여수시				
44	월하	1128	도	487	487		여수시				당초
44	월하	1128	도	486.7	486.7		여수시				변경
45	월하	640-2	도	34	34		여수시				변경
46	월하	1127	도	2,423	2,423		여수시				당초
46	월하	1127	도	2,423.2	2,423.2		여수시				변경
47	월하	780-2	도	399	399		여수시				변경
48	월하	780-8	도	674	674		여수시				변경
49	월하	779-1	도	410	410		여수시				변경
50	월하	780-3	도	4	4		여수시				변경
51	월하	779-7	도	59	59		여수시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52	월하	781-3	도	258	258		여수시				
53	월하	778-10	도	182	156		여수시				
54	월하	778-8	도	562	562		여수시				
55	월하	1117-1	대	9.4	9.4		여수시				
56	월하	1150	도	3,825	8		여수시				
57	월하	1144	도	3,339	6		여수시				
58	월하	1116	도	215.8	13		여수시				
59	월하	582-15	도	4	4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594	김점덕				
60	월하	585-5	도	328	328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614	김인곤				
61	월하	587-2	도	129	129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456-17	김순곤				
62	월하	585-4	도	24	2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 6-2	한국수자원공사				당초
62	월하	585-4	도	24	24		여수시				변경
63	월하	586-2	도	139	139		김홍영				
64	월하	643-1	도	33	33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면 월하리 631	정기주				
65	월하	780-4	도	56	56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면 월하리 595	서석진				
66	월하	779-4	도	222	222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617	김원석				당초
66	월하	779-4	도	222	222		여수시				변경
67	월하	1142	대	2,996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67	월하	1142-2	대	26.8	26.8		여수시				변경
68	월하	561-2	답	133	13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68	월하	561-2	답	133	133		여수시				변경
69	월하	562-22	전	283	28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69	월하	562-22	전	283	283		여수시				변경
70	월하	562-17	잡	2,596	1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70	월하	562-45	잡	130	130		여수시				변경
71	월하	95-7	임	158	15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71	월하	산95-7	임	158	158		여수시				변경
72	월하	585-2	도	69	69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614	김인곤				
73	월하	586-5	도	10	10		김홍영				
74	월하	778-16	주	74	37	광주 서구 쌍촌동 982-15	동화석유 주식회사				당초
74	월하	778-17	주	34	34		여수시				변경
75	월하	562-20	대	903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75	월하	562-20	대	903	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변경
76	월하	562-26	잡	3,050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당초
76	월하	562-26	잡	3,050	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0층	주식회사 동특				변경
77	월하	1117	대	802	3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75 우림필유 107-1503	정영천				당초
77	월하	1117	대	802	0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75 우림필유 107-1503	정영천				변경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봉계동 607-3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42)사업
 - 나. 명 칭: 주삼동 장곡마을~봉계저수지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당초) 8,231m² → 변경) 8,229m²
 - * 표기오류에 따른 면적 정정
 - 나. 규 모: L=350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lceil 기정: 2018.11. 8.~2025.12.31.
 \lfloor 변경: 2018.11. 8.~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봉계	614-2	도	341	173	여수시					
2	봉계	609-2	도	753	753	여수시					
3	봉계	608-2	전	563	563	여수시					
4	봉계	607-3	전	645	645	여수시					
5	봉계	607-4	전	371	371	여수시					
6	봉계	603-3	전	34	34	여수시					
7	봉계	603-4	전	584	584	여수시					
8	봉계	604-1	전	4	4	여수시					
9	봉계	602-1	전	779	779	여수시					
10	봉계	810-2	도	27	27		국토교통부				
11	봉계	808-30	구거	4,898	25		농림수산부				
12	봉계	201-1	전	347	347	여수시					
13	봉계	203-1	전	444	444	여수시					
14	봉계	202-1	전	1,090	1,090	여수시					
15	봉계	210-4	전	215	215	여수시					
16	봉계	210-5	전	308	308	여수시					
17	봉계	산76-2	임	1,388	250	김종관	경기도오산시수정동534 대우아파트106-603				
	봉계	산76-2	임	1,388	250	김민준	경기도오산시수정동534 대우아파트106-603				
18	봉계	211-12	전	587	587	여수시					
19	봉계	211-14	도	14	14	여수시					
20	봉계	211-11	전	353	353	여수시					
21	봉계	196-12	전	255	255	여수시					
22	봉계	196-14	전	69	69	여수시					
23	봉계	196-15	전	250	250	여수시					
24	봉계	196-17	전	87	87	여수시					
25	봉계	212-3	전	2	2	신상유	여수시 신기북3길 9-8(신기동)				
총합계				14,408	8,229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여수시 고시 제2026 - 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일

여수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시도	11호선	덕양 ~ 연화	소라면 덕양리, 봉두리	75,820㎡	소라면 봉두리 1247-7도	소라면 덕양리 1219-29대	-	2.29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472, 소로 3-1087)사업

나. 명칭: 상세동~원봉두 시도11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위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64-4번지 일원

3. 사업내용: 도로 개설 L=2,294m, B=6~8m(A=75,820㎡)

4. 사업 기간 : (기정)2015. 6. ~ 2025. 12. 31.
(변경)2015. 6. ~ 2026. 12. 31.

5. 사업시행자: 여수시장(도로과)

6. 설계도서 등 관계도서의 열람 : 여수시청 도로과(☎061-659-2992, 사업 시행 기간 내)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 붙임 참조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6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472, 소로3-1087)사업
 - 나. 명칭: 상세동~원봉두 시도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규모: L=2,294m, B=7.5~8.0m
 - 나. 면적: 75,8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가. 기정: 2020.10.18. ~ 2025.12.31.
 - 나. 변경: 2020.10.18.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계재생략(도로구역결정 세목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1/3)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위 치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내용	
1	소라면 덕양리	1438	도	474	4		국 (국토교통부)				
2	소라면 덕양리	산64-4	임	3,032	1,316		여수시				
3	소라면 덕양리	1220	학	16,475	151		전라남도 교육감				
4	소라면 덕양리	1219-21	대	1,247	31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	농업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주)광주 은행	근저당	
5	소라면 덕양리	1220-1	학	1,116	204		전라남도				
6	소라면 덕양리	1219-15	도	31	31		전라남도				
7	소라면 덕양리	산64-7	임	229	220		전라남도				
8	소라면 덕양리	1219-30	창	58	35		전라남도				
9	소라면 덕양리	1219-28	전	65	48		전라남도				
10	소라면 덕양리	1219-16	도	54	1		전라남도				
11	소라면 덕양리	1219-12	도	3	2		전라남도				
12	소라면 덕양리	1219-3	대	99	31		전라남도				
13	소라면 덕양리	1219-29	대	100	1		전라남도				
14	소라면 덕양리	산206-1	도	5,108	717		여수시				
15	소라면 덕양리	산209-2	임	418	418		여수시				
16	소라면 덕양리	1138-1	전	759	759		여수시				
17	소라면 덕양리	산209-1	임	501	501		여수시				
18	소라면 덕양리	산208-2	임	1,300	1,300		여수시				
19	소라면 덕양리	산210-1	임	110	110		여수시				
20	소라면 덕양리	산211-1	임	1,857	1,857		여수시				
21	소라면 덕양리	산212-1	임	2,644	2,644		여수시				
22	소라면 덕양리	1139-1	전	5	5		여수시				
23	소라면 덕양리	1140-3	전	111	111		여수시				
24	소라면 덕양리	산216-3	임	1,356	1,356		여수시				
25	소라면 덕양리	산216-2	임	278	278		여수시				
26	소라면 덕양리	산214-1	임	477	477		여수시				
27	소라면 덕양리	산213-1	임	2,030	2,030		여수시				
28	소라면 덕양리	산216-1	임	1,637	1,637		여수시				
29	소라면 봉두리	산48-4	임	189	189		여수시				
30	소라면 봉두리	산57-3	임	71	71		여수시				
31	소라면 봉두리	산58-6	임	118	118		여수시				
32	소라면 봉두리	산57-2	임	9	9		여수시				
33	소라면 봉두리	산93-4	임	6,522	6,522		여수시				
34	소라면 봉두리	산91-2	임	60	60		여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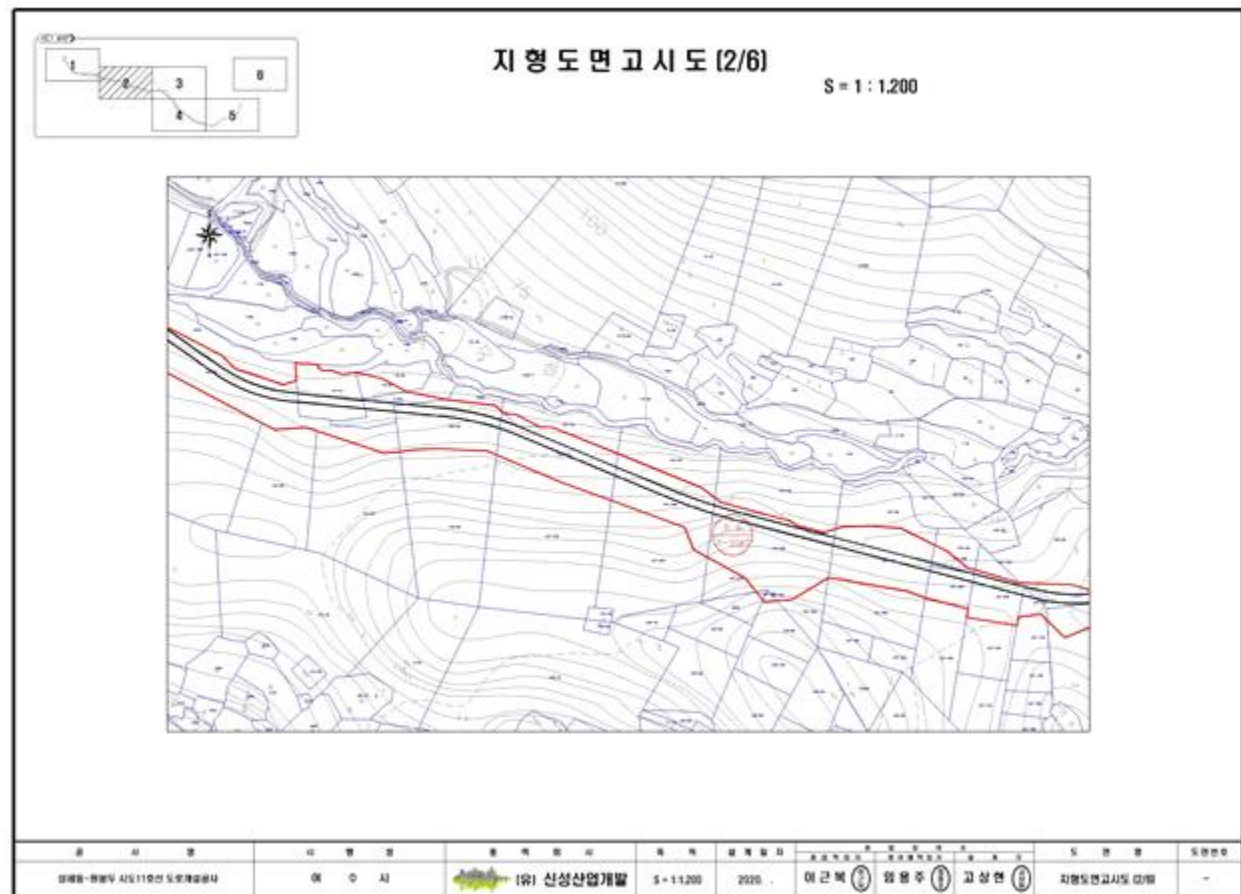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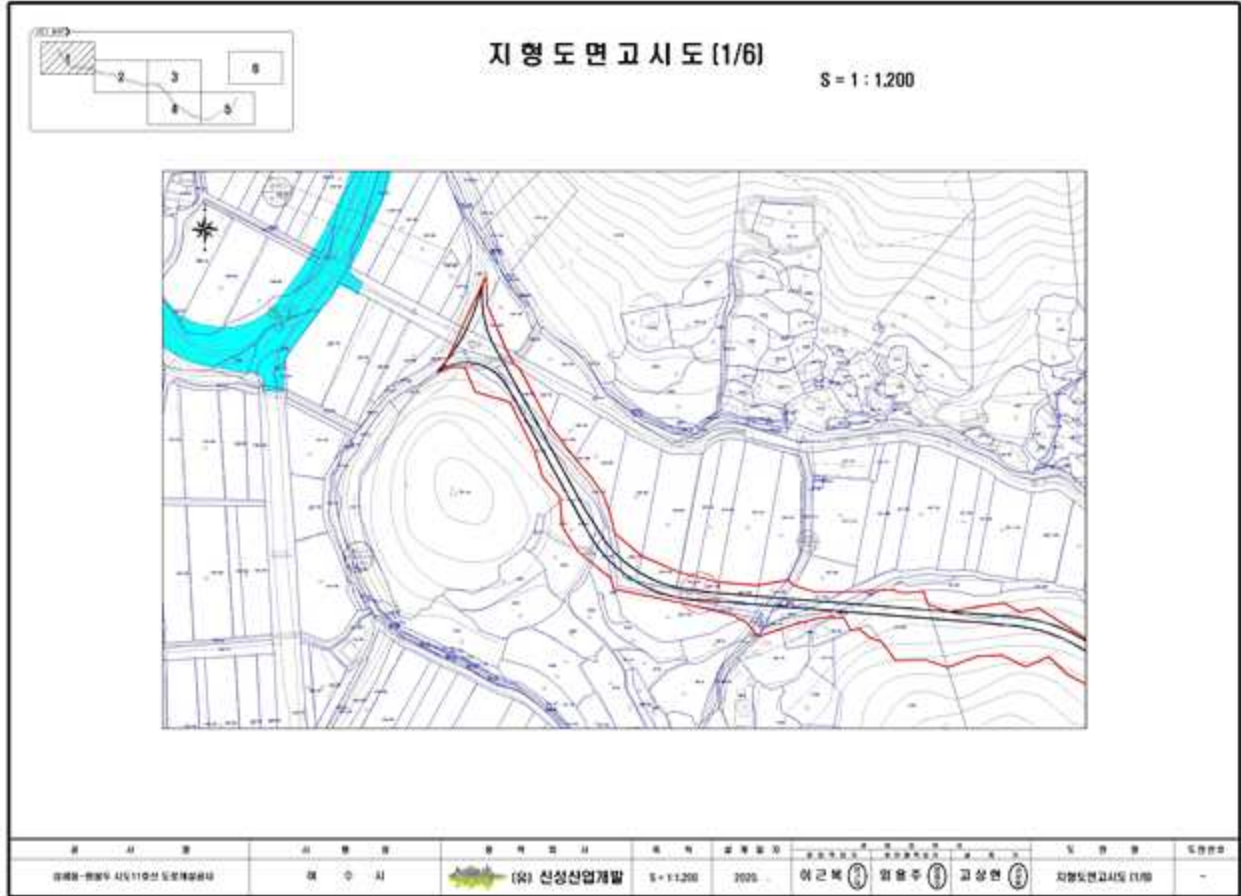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2/3)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위 치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내용		
35	소라면 봉두리	산91-1	임	169	169		여수시					
36	소라면 봉두리	산89-1	임	1,069	1,069		여수시					
37	소라면 봉두리	산95-3	임	773	773		여수시					
38	소라면 봉두리	산88-1	임	1,090	1,090		여수시					
39	소라면 봉두리	산87-31	임	276	276		여수시					
40	소라면 봉두리	산87-30	임	1,301	1,301		여수시					
41	소라면 봉두리	산87-32	임	859	859		여수시					
42	소라면 봉두리	산87-22	임	3,201	3,201		여수시					
43	소라면 봉두리	산87-26	임	4,519	4,519		여수시					
44	소라면 봉두리	산85-13	임	45	45		여수시					
45	소라면 봉두리	산85-12	임	28	28		여수시					
46	소라면 봉두리	산87-24	임	2,799	2,799		여수시					
47	소라면 봉두리	산99-1	임	513	513	서울 성동구 홍익동 ***	이**					
							소라면 덕양리***	이**				
							여수시					
48	소라면 봉두리	산93-6	임	779	779		여수시					
49	소라면 봉두리	산91-3	임	1,230	1,230		여수시					
50	소라면 봉두리	산94-1	임	240	240		여수시					
51	소라면 봉두리	산95-4	임	924	924		여수시					
52	소라면 봉두리	산87-29	임	333	333		여수시					
53	소라면 봉두리	산87-20	임	2,962	2,962		여수시					
54	소라면 봉두리	산82-2	임	2,851	2,851		여수시					
55	소라면 봉두리	산81-2	임	9,142	9,142		여수시					
56	소라면 봉두리	산79-4	임	2,411	2,411		여수시					
57	소라면 봉두리	348-4	도	24	24		여수시					
58	소라면 봉두리	348-5	전	260	260		여수시					
59	소라면 봉두리	347	답	194	194		여수시					
60	소라면 봉두리	1256-12	구	20	20		국 (농림수산부)					
61	소라면 봉두리	333-4	도	61	61		여수시					
62	소라면 봉두리	333-2	답	46	46		여수시					
63	소라면 봉두리	1256-21	답	55	55		여수시					
64	소라면 봉두리	1256-10	구	1,160	1,160		국 (농림수산부)					
65	소라면 봉두리	0-53	가	1,236	1,236		여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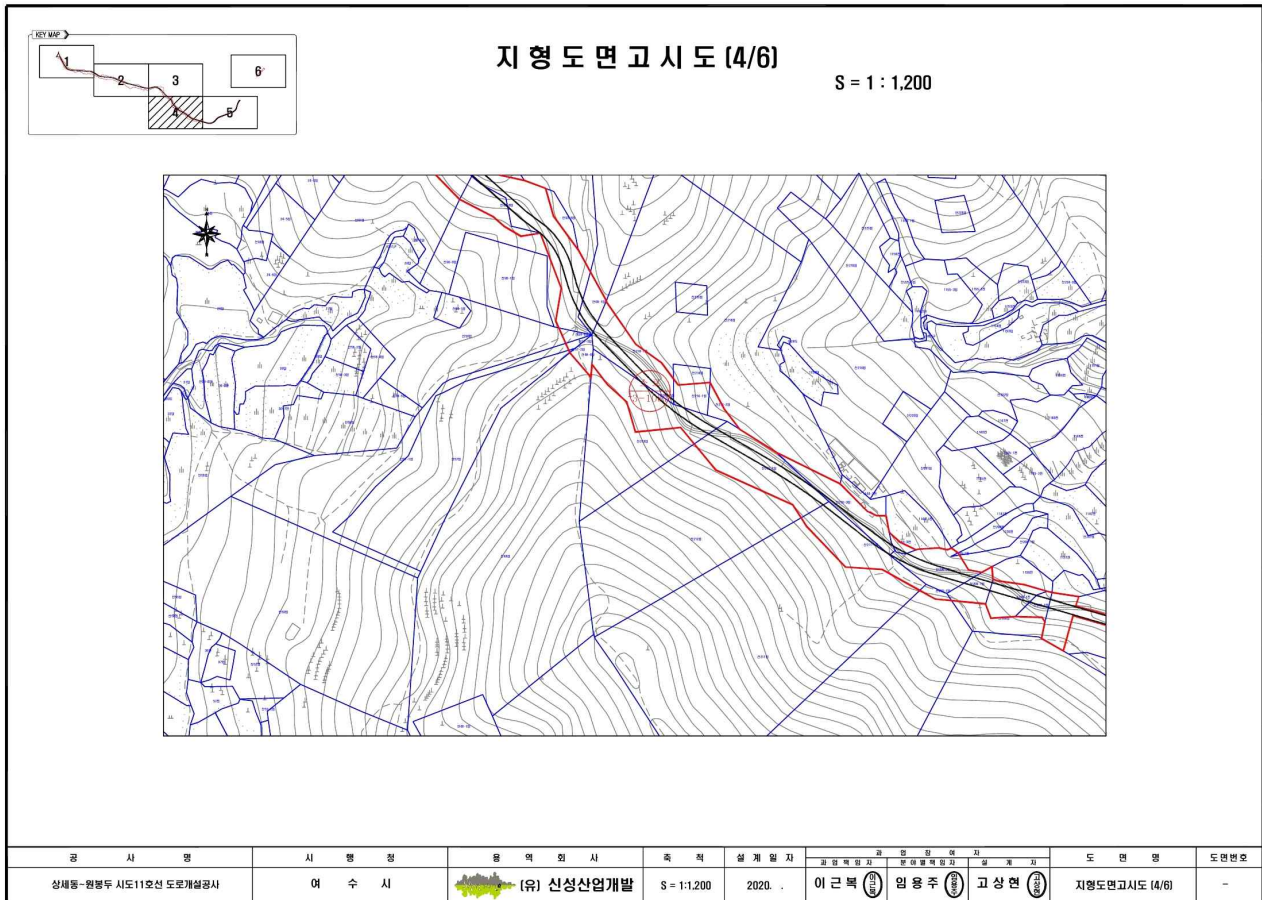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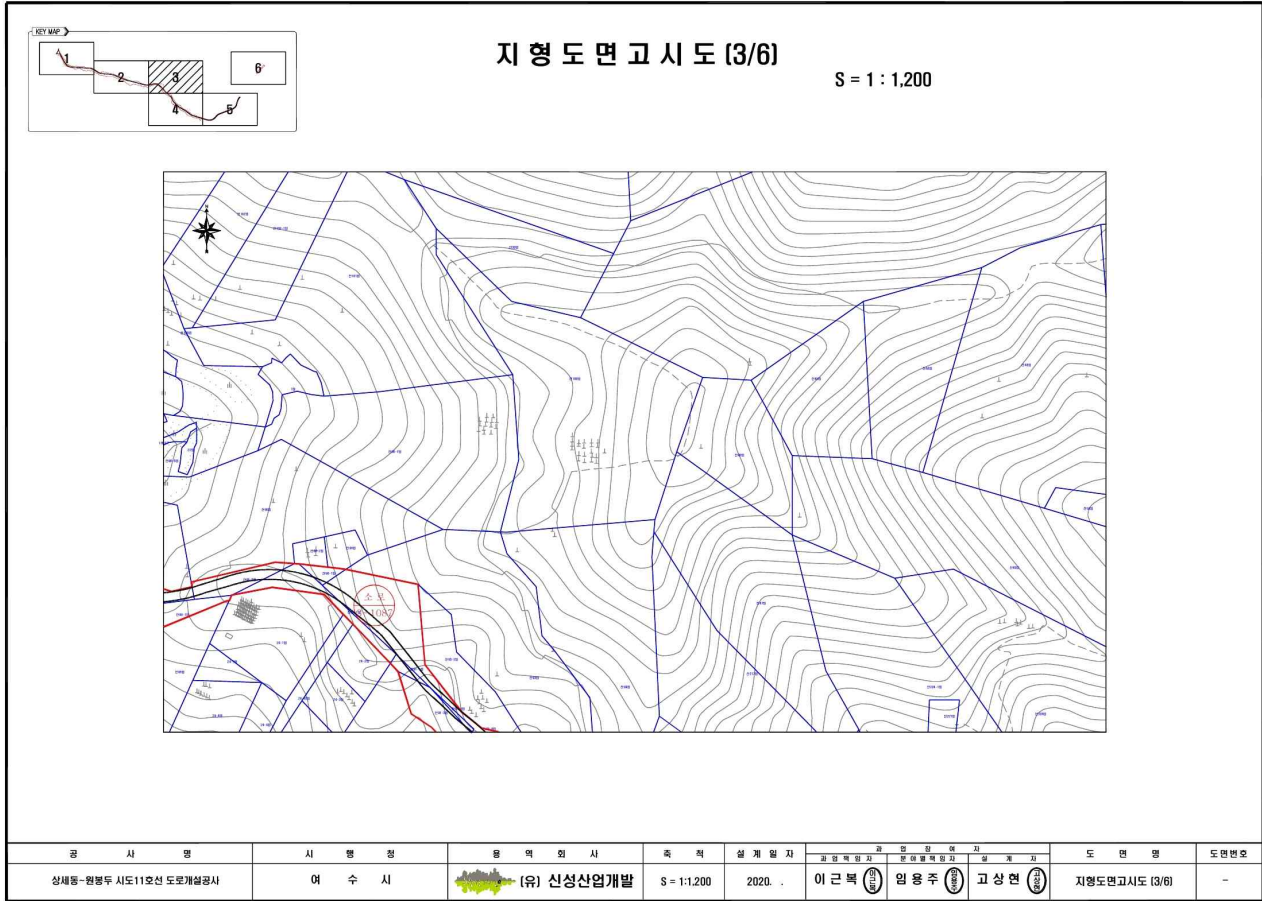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3/3)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위 치	지 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내용	
66	소라면 봉두리	174-3	임	408	408		여수시				
67	소라면 봉두리	174-1	전	1,785	1,785		여수시				
68	소라면 봉두리	346	답	526	171	소라면 중승길***	서**				
69	소라면 봉두리	1257-18	구	1,635	293		국 (농림수산부)				
70	소라면 봉두리	1257-20	답	381	381		여수시				
71	소라면 봉두리	342	답	42	42		여수시				
72	소라면 봉두리	342-1	도	26	26		여수시				
73	소라면 봉두리	1256-20	유	223	223		여수시				
74	소라면 봉두리	1256-19	답	393	393		여수시				
75	소라면 봉두리	1256-18	답	206	206		여수시				
76	소라면 봉두리	1256-17	답	164	164		여수시				
77	소라면 봉두리	1256-16	답	489	489		여수시				
78	소라면 봉두리	1256-9	도	2,635	1,936		국 (농림수산부)				
79	소라면 봉두리	324-1	답	203	203		여수시				
80	소라면 봉두리	1369-4	도	2,145	91		국 (국토교통부)				
81	소라면 봉두리	315-1	전	56	56		여수시				
82	소라면 봉두리	316-1	전	758	758		여수시				
83	소라면 봉두리	318-8	임	1,578	1,578		여수시				
84	소라면 봉두리	318-2	도	1,137	178		여수시				
85	소라면 봉두리	1249-8	도	509	49		여수시				
86	소라면 봉두리	1256-15	답	373	373		여수시				
87	소라면 봉두리	1256-14	답	2	2		여수시				
88	소라면 봉두리	1256-13	답	71	71		여수시				
89	소라면 봉두리	1248-3	답	436	436		여수시				
90	소라면 봉두리	1269-2	구	6,853	498		국 (농림수산부)				
91	소라면 봉두리	1247-18	답	322	322		여수시				
92	소라면 봉두리	1247-7	도	1,225	300		여수시				
93	소라면 봉두리	산87-6	임	3,820	47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대전리 ***	심**				
94	소라면 봉두리	산87-1	임	1,695	116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대전리 ***	심**				
95	소라면 봉두리	산81	임	3,388	332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	남**				
96	소라면 봉두리	산79	임	7,510	79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	최**				
						전남 여수시 미평동 ***	오**				
합 계	96필지			130,107	75,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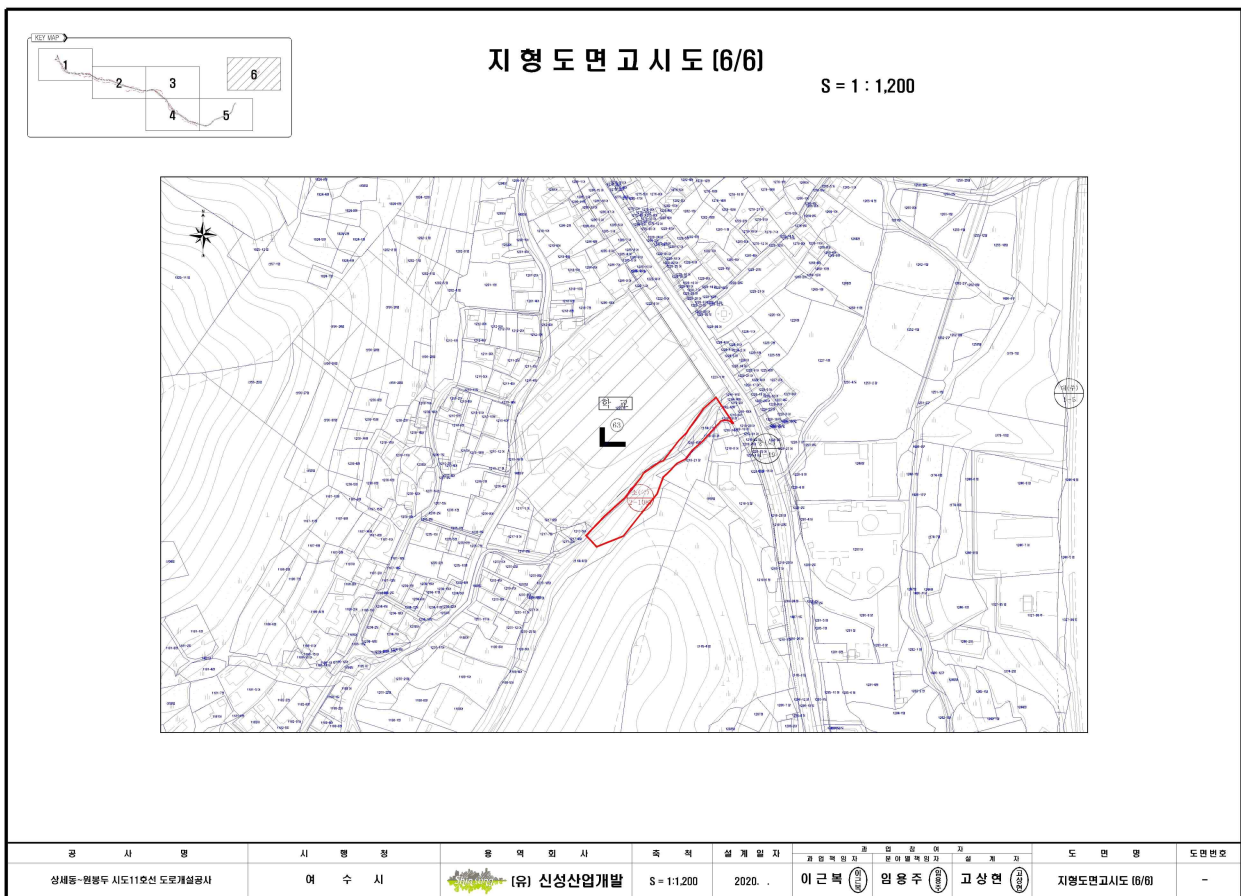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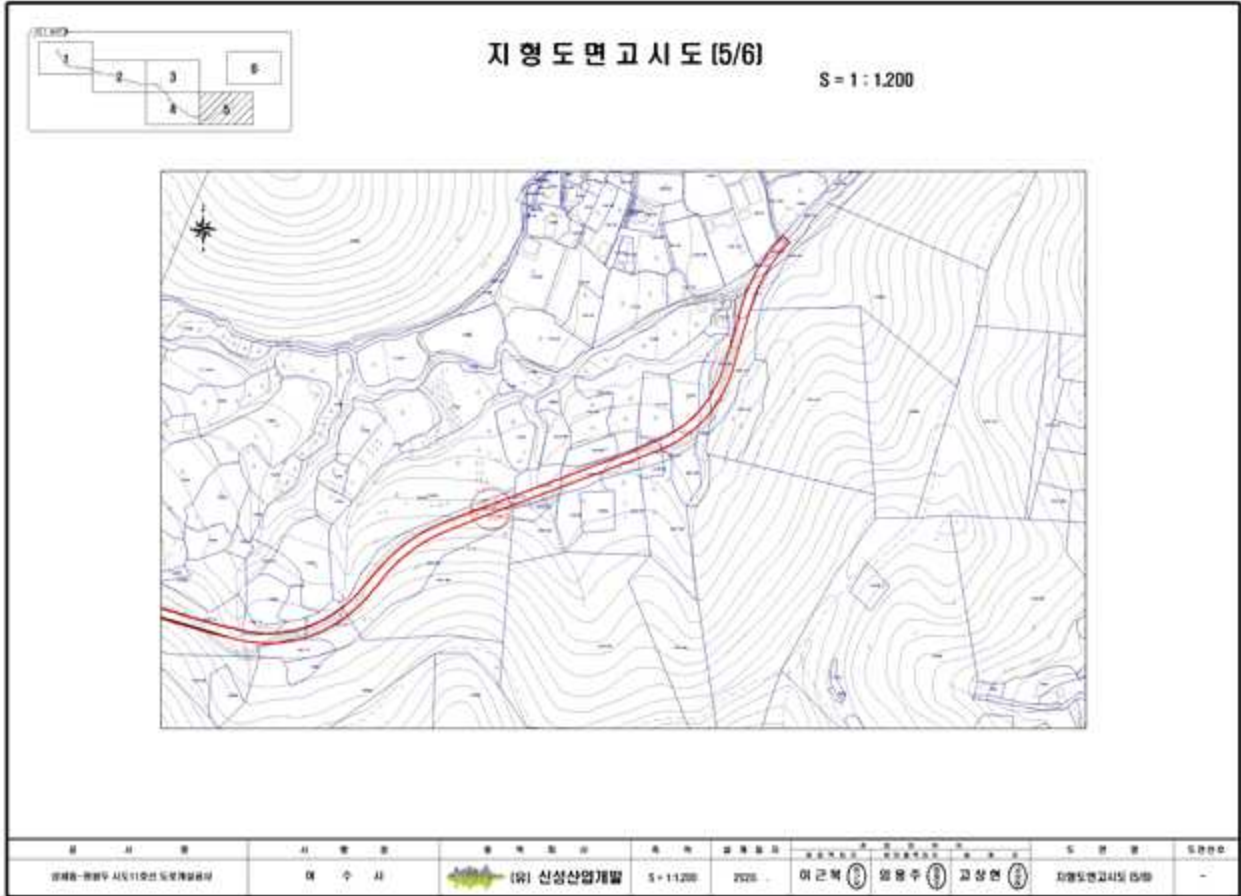
지형도면(1/3)



지형도면(2/3)



지형도면(3/3)



여수시 고시 제2026-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일

여수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시도	12호선	소로 2-154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7-2 번지 일원	8,939㎡	소라면 복산리 1 710-7	소라면 복산리 4 1901-5	-	0.561

※ 총연장 0.919km 중 금회 0.561km 추진

3. 명칭: 소라면 달천마을 일원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기정)2024.1.5. ~ 2025. 12. 31.
(변경)2024.1.5. ~ 2026.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26. 1. 2. ~ 2026. 1. 19.(17일)

나.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2992)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붙임 1>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7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548)사업

나. 명 칭 : 소라면 달천마을 일원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규 모 : L=561m, B=8m

나. 면 적 : 8,939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기정: 2024. 1. 5. ~ 2025.12.31.

나. 변경: 2024. 1. 5.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 생략

(도로구역 결정 세목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구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1/3)

연번	면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소라면 복산리	1710-6	대지	500	37	☞ 국유지	여수시				
2	"	1710-3	대지	562	20	***구새마을회	소라면 복산리 ****				
3	"	1710-7	도로	190	82	황*홍	소라면 복산리 ****				
4	"	1710-12	도로	15	15	황*홍	소라면 복산리 ****				
5	"	1710-8	전	4	4	☞ 국유지	여수시				
6	"	2021	구거	605	7	☞ 국유지	국토교통부				
7	"	1709-5	대지	41	2	황*선	소라면 복산리 ****-*				
8	"	1710-11	도로	17	17	☞ 국유지	여수시				
9	"	1710-4	전	75	26	황*규	소라면 복산리 ****-*				
10	"	1710-5	도로	349	256	황*규	소라면 복산리 ****-*				
11	"	1710-9	대지	448	32	**면복산4 구노인회	소라면 복산리 ****-*				
12	"	1711-4	대지	26	26	황*선	소라면 복산리 ****				
13	"	1711-2	도로	532	532	☞ 국유지	여수시				
14	"	1711-3	대지	96	40	황*선	소라면 복산리 ***	근저당 권설정		여천농업협 동조합	
15	"	1713-4	도로	105	36	황*선	소라면 복산리 ***	근저당 권설정		여천농업협 동조합	
16	"	1713-1	도로	193	193	이*렬	소라면 복산리 ****				
17	"	1717-3	도로	34	34	황*선	소라면 복산리 ****-*				
18	"	1714	전	1,910	26	김*희	여수시 신기동 ***, ****-***				
19	"	1714-1	도로	417	417	☞ 국유지	여수시				
20	"	1715-3	도로	4,988	240	☞ 국유지	기획재정부				
21	"	1715-1	도로	729	729	김*규	소라면 복산리 ****				
22	"	1715-2	전	601	59	김*규	소라면 복산리 ****				
23	"	1716-3	전	40	40	구*연	여수시 학동 **-*				
						박*희	여수시 둔덕동 ***, ****-***				
						성*연	여수시 쌍봉로 ***, ***동 ***호(둔덕동, **아파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2/3)

연번	면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4	소라면 복산리	1716	전	94	94	김*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길 **, ***동 ***호 (**곡동,**갑을**)				
25	"	1716-4	도로	23	23	구*연	여수시 학동 ***				
						박*희	여수시 둔덕동 ***, ***-***				
						성*연	여수시 쌍봉로 ***, ***동 ***호(둔덕동, **아파트)				
26	"	1716-5	전	57	35	구*연	여수시 학동 ***				
						박*희	여수시 둔덕동 ***, ***-***				
						성*연	여수시 쌍봉로 ***, ***동 ***호(둔덕동, **아파트)				
27	"	1716-2	전	503	91	황*희	순천시 연향동 ****-*, ***-***				
28	"	1716-1	도로	781	781	국유지	여수시				
29	"	1910-1	전	690	317	김*규	여수시 소라면 달천길 ***-*				
30	"	1910-3	도로	482	482	김*규	소라면 복산리 ****				
31	"	1909-3	전	653	92	김*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길 **, ***동 ***호 (**곡동,**갑을**)				
32	"	1909-1	도로	65	65	김*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 **아파트 ***-***				
33	"	1907	전	139	139	황*선	광양시 광양읍 용강*길 **, ***-***				
34	"	1835-1 3	도로	771	771	국유지	여수시				
35	"	1835-1 0	전	748	113	박*주	여수시 학동*길 ***				
36	"	1835-2 1	도로	614	614	강*자	소라면 복산리****				
37	"	1835-1 8	도로	25	25	국유지	여수시				
38	"	1835-1 2	답	1,38 8	687	김*규	소라면 복산리 ****				
39	"	1835-1 9	도로	3	3	국유지	여수시				
40	"	1835-2 0	도로	167	167	국유지	여수시				
41	"	1835-3	답	5,78 2	404	김*숙	여수시 화장동 ***-**				
						장*준	여수시 웅천중앙로 **, ***-***				
42	"	1835-1 5	도로	239	239	국유지	여수시				
43	"	2019	도로	10,0 74	74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	1835-4	답	58	42	황*선	광양시 광양읍 용강*길 **, ***-***				
45	"	1835-2 2	도로	5	5	국유지	여수시				

□ 도로구역 위치도



□ 지형도면



여수시 고시 제2026 - 1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죽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죽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율촌조화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제

2026. 1. 2.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죽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죽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죽림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시설의 명칭	부지면적(m ²)	위 치	비 고
123	근린공원	죽림공원	16,185.7	소라면 죽림리 1169번지	전라남도 고시 제2005-220호

2. 공원이정 및 결정현황

- 공원이정 년 원 일 : 2005. 12. 27. (전라남도 고시 제2005-220호)
- 공원이정 조성계획 결정 : 2006. 11. 10. (전라남도 고시 제2006-152호)

3. 법적 검토사항

- 변경 공원이시설률 : 27.5%(법정 40%미만)
- 변경 공원이녹지율 : 72.5%(법정 60%이상)
- 경미한 변경사항 : 시설부지면적 변경률10%미만(변경률3.32%) 로 경미한변경 해당

나. 공원이정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원이정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물(m ²)		건물동수 (공작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6,192.00	3,914.39	26.78	26.78	1동(70기)	
	변경		16,192.00	4,451.84	26.78	26.78		
공원이시설	기정		3,914.39	3,914.39	26.78	26.78	1동(70기)	
	변경		4,451.84	4,451.84	26.78	26.78		
도로광장	기정	도로 및 광장	3,056.47	-	-	-	-	-
	변경		2,756.63	-	-	-	-	-
조경시설	기정	바닥분수 외 5종	-	-	-	-	(17기)	-
	변경		-	-	-	-	(15기)	-
휴양시설	기정	휴게소 외 1종	150.63	-	-	-	(25기)	-
	변경		75.70	-	-	-	(19기)	-
유희시설	기정	어린이놀이터	435.37	-	-	-	(12기)	-
	변경		821.42	-	-	-	(7기)	-
운동시설	기정	체력단련장	245.14	-	-	-	(4기)	-
	변경		771.32	-	-	-	(5기)	-
편익시설	기정	화장실	26.78	-	26.78	26.8	1동	-
	변경		26.78	-	26.78	26.8	1동	-
관리시설	기정	관리시설	-	-	-	-	(12기)	-
	변경		-	-	-	-	(12기)	-
녹지	기정	녹지, 저류지	12,277.61	-	-	-	-	-
	변경		11,740.16	-	-	-	-	-

2. 조성계획(변경)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m ²)	건축물(m ²)		건물동수 (공직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16,192.00	26.78	26.78	1동(70기)	
	변경				16,192.00	26.78	26.78	1동(58기)	
공원 시설	기정		합 계		3,914.39	26.78	26.78	1동(70기)	
	변경				4,451.84	26.78	26.78	1동(58기)	
도로	기정		소 계		3,056.47	-	-		
	변경				2,756.63				
	기정		도 로		2,039.96	-	-		
	변경		도 로		2,083.73				
	기정	1	광 장		1,016.51	-	-		
	변경		광 장		672.90				
	기정	1-1	광장 1		232.54	-	-		
	변경		광장 1		232.54				
	기정	1-2	광장 2		356.08				
	변경		광장 2		156.10				
	기정	1-3	광장 3		283.86				
	변경		광장 3		263.55				
	기정	1-4	광장 4		123.33				
	변경		-		-				
	기정	1-5	광장 5		20.71	-	-		
	변경		광장 5		20.71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	-	-	(17기)	
	변경								(15기)
	기정	㉑	바닥분수			-	-	1기	
	기정	㉒	막구조파고리			-	-	1기	
	기정	㉓	장파고리			-	-	2기	
	기정	㉔	입구문주			-	-	1기	
	기정	㉕	조형가벽			-	-	8기	
	기정	㉖	일출벽			-	-	4기	
	변경	㉗	플랜터					2기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150.63	-	-	(25기)	
	변경				75.70				(19기)
	기정	2	휴게소		150.63	-	-		
	변경		휴게소		75.70				
	기정	2-1	휴게소 1		47.70	-	-		
	변경		휴게소 1		47.70				
	기정	2-2	휴게소 2		102.93	-	-		
	변경		휴게소 2		28.00				
	기정	㉘	벤 치		-	-	-	25기	
	변경		벤 치					19기	
유희 시설	기정		소 계		435.37	-	-	(12기)	0
	변경				821.42				(7기)
	기정	3	어린이놀이터		435.37				
	변경		어린이놀이터		821.42				
	기정	3-1	어린이놀이터1		435.37				
	변경		어린이놀이터1		821.42				
	기정	㉙	어린이놀이시설					12기	
	변경		어린이놀이시설					7기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245.14	-	-	(4기)	
	변경				771.32	-	-	(5기)	
	기정	4	체력단련장		101.31	-	-		
	변경		체력단련장		111.32				
	기정	4-1	체력단련장1		101.31	-	-		
	변경		체력단련장1		111.32				
	기정	5	다목적구장		143.84	-	-		
	변경		다목적구장		660.00				
	기정	06	체력단련시설					4기	
	변경		체력단련시설					5기	
편익 시설	기정		소 계		26.78	26.78	26.78	1동	
	변경				26.78	26.78	26.78	1동	
	기정	6	화장실		26.78	26.78	26.78	1동	1층
	변경	6	화장실		26.78	26.78	26.78	1동	1층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	-	-	(12기)	
	변경				-	-	-	(12기)	
	기정	7	관리시설		-	-	-		
	기정	7-1	분수제어판		-	-	-	1기	
	기정	7-2	염수투입기		-	-	-	1기	
	기정	7-3	기피제분사기		-	-	-	2기	
	기정	7-4	조명타워분정반		-	-	-	1기	
	기정	7-5	점말기		-	-	-	1기	
	기정	08	안내판		-	-	-	6기	
녹지 및 기타	기정		소 계	녹지, 저류지	12,277.61				
	변경				11,740.16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합 계			2,040.0				
변경			합 계			2,083.7				
기정	소 로		소 계			120.7				
변경						120.7				
기정		1	1	7.1	17.0	120.7				
변경		1	1	7.1	17.0	120.7				
기정	산책로		소 계			1,919.3	산책로			
변경						1,963.0				
기정			1	3.0	330.6	991.8	산책로			
변경			1	3.0	330.6	991.8	산책로			
기정			2	3.3	9.8	32.3	산책로			
변경			2	3.3	9.8	32.3	산책로			
기정			3	3.3	83.7	276.2	산책로			
변경			3	3.3	83.7	276.2	산책로			
기정			4	2.2	102.3	225.1	산책로			
변경			4	2.2	102.3	225.1	산책로			
기정			5	3.0	29.5	88.5	산책로			
변경			5	3.0	29.5	88.5	산책로			
기정			6	3.3	18.7	61.7	산책로			
변경			6	3.3	18.7	61.7	산책로			
기정			7	2.3	48.1	110.6	산책로			
변경			7	2.3	54.1	124.4	산책로			
기정			8	2.3	19.5	44.9	산책로			
변경			8	2.3	35.8	82.3	산책로			
기정			9	2.3	17.6	40.5	산책로			
변경			-			-	산책로			
기정			10	1.8	19.7	34.5	산책로			
변경			-			-	산책로			
기정			11	5.5	2.4	13.2	산책로			
변경			-			-	산책로			
변경			12	1.2	67.2	80.6	산책로			

여수시 공고 제2025-3890호

공 고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0.

여 수 시 장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결과

1. 공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13.(14일간)
2.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내역
 - 회 의 일 : 2025. 12. 18.(목)
 - 회의내용 : 1.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 보고
2. 입지 선호 조사 등 주민 수용성 분야
3. 거문도 서측 풍황계측기 설치 사업 보고
4. 광평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관련 보고
 - 회 의 록 : “붙임” 참조
3.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 (☎061-659-2140)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회 의 록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자문회의
- 일 시 : '25. 12. 18.(목) 14:00 ~ 15:40, 해상풍력 합동사무실
- 참석인원 : 총 30명 중 17명 참석(56.7%)

□ 회의 결과(주요내용)

I.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 보고

○ 녹색에너지연구원 이창민 선임연구원

- 사업 추진 전반 사항 보고

○ 위원장(부시장) 최정기

- 해상풍력사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여수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며, 여수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에너지 전환은 물론 지역 산업의 다각화, 이익공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어업인과의 수산업의 공존이며 지역의 삶의 터전 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함
- 최근 주민수용성 수행기관이 선정되면서,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각 분야의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섰으며 수행기관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랍
- 현재 유럽형 해상풍력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유럽형은 에너지 생산을 최우선으로 설계돼 있고 어업과 공존화가 되는 모델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임

- 어구의 안정성, 어업의 적절성, 이익공유의 분배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용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형 해상풍력 조성 필요

○ 한국풍력재단 정책센터장 손충렬

- 오로지 전력 계통 해결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해상풍력 대단지 조성이 되면 생산된 전력을 계통이 없는 상태에서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함

○ 화정면 발전위원장 이강채

- 어업인의 생계에 지장이 없게끔 공존이 필요해 보이지만, 단지 내 어업은 기술적으로 힘들어 보이므로 기술적인 공존을 무조건 강제하지 않는 법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남면 대두마을 이장 김근평

- 해외 선진지 중국 견학을 갔을 때 공존의 실증사례로 단지 내 가두리 양식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여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최소 50%만이라도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수산인 단체와 깊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함

○ 삼산면 초도 의성리 이장 김용수

- 주요 조업구역의 침해 없는 단지 발굴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몇 개의 어업단체의 경우 조업구역이 아님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위원장(부시장) 최정기

- 위탁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어업 공존의 다양한 분야로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Ⅱ. 주민 수용성 분야 계획 보고 및 자문

○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

- 여수시 해상풍력 어민과 주민을 위한 지역수용성 계획 보고

○ 위원장(부시장) 최정기

- 주민 수용성보다는 어업 공존화가 더 우선 되어야 할 것
- 따라서 남은 용역비로 어업 공존 분야에 투자해야 함(어느 어업 종류를 희생시킬 것인지, 어구어법의 개발, 단지 대 어업 양식 방법 증명 등)

○ 남면 대두마을 이장 김근평

- 앞으로는 각 마을의 대표자(해상풍력 대책위원장 등)를 대상으로 관련 운영위원회 숙의경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부위원장(거문도수협조합장) 김효열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해야함
-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민들의 생존화 방안, 활용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수용이 있어야 함

Ⅲ. 거문도 서측 풍향계측기 설치 사업 보고

○ 케이베츠 류재용 연구소장

- 거문도 서도측 고정식 석션타입 실증 구조물 1기 설치 계획 안내

○ 여수중앙연안자망협회장 여인남

- 설치 예정인 위치의 정확한 좌표 공유 바람

IV. 광평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의견조회

○ 삼해개발 흥동일 상무

- 2027년 착공 목표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전력공사와 계통연계 협의 후, 어민·주민 대상 지속 협의 예정임

공 고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공고

연 번	직 위	성 명	임 기	비 고
1	위원장	최정기	재임기간	공무원 (부시장)
2	부위원장	나병곤	재임기간	공무원 (행정안전국장)
3	위원	-	재임기간	공무원 (도시건설국장)
4	위원	염창열	2026. 1. 28. ~ 2028. 1. 27.	공인중개사
5	위원	김동균	2026. 1. 28. ~ 2028. 1. 27.	행정사
6	위원	채갑동	2026. 1. 28. ~ 2028. 1. 27.	토목기술자
7	위원	전지원	2026. 1. 28. ~ 2028. 1. 27.	세무사
8	위원	이주경	2026. 1. 28. ~ 2028. 1. 27.	건축사
9	위원	최낙홍	2026. 1. 28. ~ 2028. 1. 27.	법무사
10	위원	위준이	2026. 1. 28. ~ 2028. 1. 27.	건축사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신복지구 5명
2. 공고기간: 2025. 12. 31. ~ 2026. 1. 14.(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1,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12. 31.

여 수 시
장

공시송달조서

순번	성명	발송구분	취급구분	주소	발송일자	배달결과
1	김*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회서로 98	2025-12-09	회사동료 수령
2	김*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122	2025-12-09	기타 관계인 배*태 수령
3	김*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71A동 502호(구포동, 부광맨션)	2025-12-09	패문부재(반송)
4	김*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73, 105동 203호(다대동, 현대아파트)	2025-12-09	회사동료 수령
5	조*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5길20, 509호	2025-12-09	패문부재(반송)

[여수시 공고 제2025-2973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7-3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12. 31.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7-4번지 외 1필지(17-6번지)
2. 도로면적 : 193m²
3. 도로길이 : 47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93	
화양면 옥적리	17-4	전	1,885	81	
화양면 옥적리	17-6	대	705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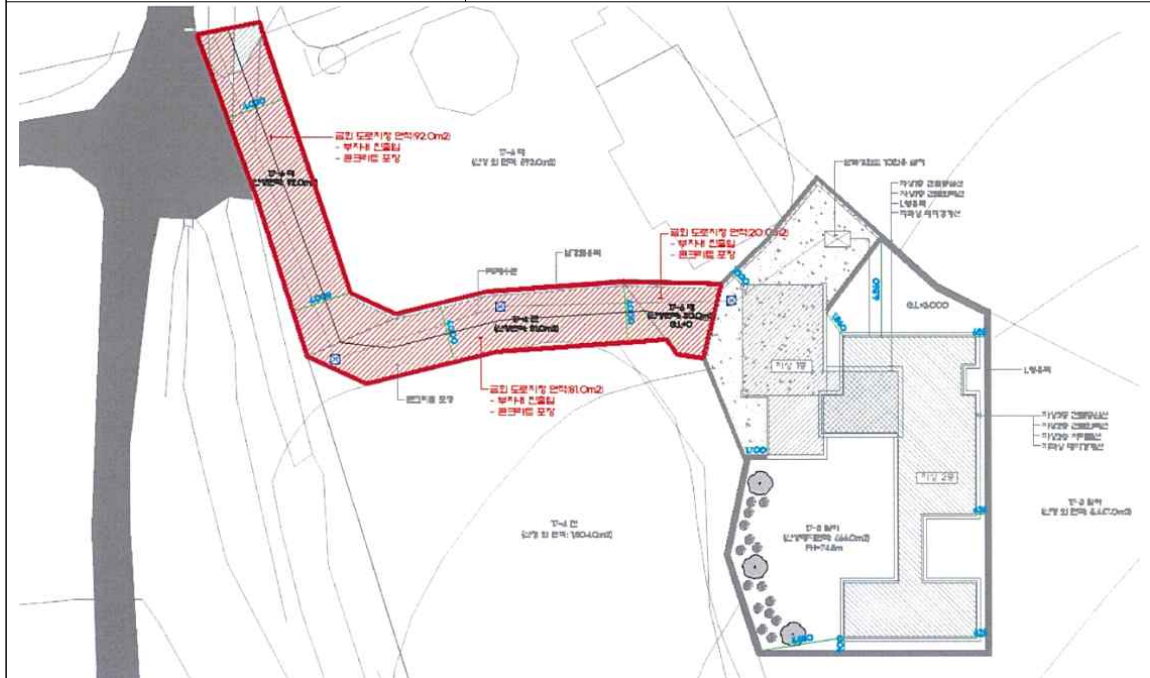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치도



현황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정정)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3883호에 대한 정정공고임.(관련 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공고일 기재, 공고기간 정정

2025. 12. 31.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재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공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 조성준, 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 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 유영걸 (☎062)220-2500)

라. 설계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재지구 A3
- 대지면적 : 52,617.0000㎡
- 연면적 : 208,864.6781㎡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지하5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1,095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5. 08.(3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업비

- 총사업비 : 586,783,735천원
 - 대지비 : 156,632,987천원
 - 총공사비 : 315,907,82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 : 275,253,869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40,653,959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6,206,424,238원(건축공사비의 2.2548%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6,020,231,511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2026												2027												2028												2029																																					
년도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비고																																
전체공정		[Redacted]																																																																								2026.03.09.~2029.05.08. (38개월)	
건축공사		[Redacted]																																																																								2026.03.09.~2029.05.08. (38개월)	
구조체공사		[Redacted]																																																																								2026.09.01.~2029.03.31. (19개월)	
토목공사		[Redacted]																																																																								2026.03.09.~2029.05.08. (38개월)	
설비공사		[Redacted]																																																																								2026.05.09.~2029.05.08. (36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목)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한 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해당없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① 사업주체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외 1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② 시공자 “중흥토건(주)” 외 3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0.41점
-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 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7)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 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10.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⑩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

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해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 함.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 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 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

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분야별 세부평가서 : 분야별 세부평가서 및 별첨 제출

다. 유의사항

-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 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7)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

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

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	전화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대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m²)]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회 사)	①재무상태 건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가항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훈련	2.5 0.5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괄 감리 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면접(발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평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 별 감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평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 주감 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7210mm×297mm[백상지(80g/㎡)]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건 실 도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점수</th> <th style="width: 20%;">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20%;">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55%;">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td> <td style="text-align: center;">AAA</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A⁺, AA⁰, AA⁻</td> <td style="text-align: center;">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⁰,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A2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2</td> <td style="text-align: center;">BBB⁺</td> <td style="text-align: center;">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B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A3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B⁻</td> <td style="text-align: center;">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4</td> <td style="text-align: center;">BB⁺, BB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 B⁰, B⁻</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⁰,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C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C 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 , AA ⁰ , AA ⁻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 ⁰	A3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3.4	BB ⁺ , BB ⁰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 ⁻	B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에 준하는 등급)	B ⁺ , B ⁰ ,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2.6	CCC ⁺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 , AA ⁰ , AA ⁻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 ⁰	A3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3.4	BB ⁺ , BB ⁰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 ⁻	B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에 준하는 등급)																																													
	B ⁺ , B ⁰ ,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2.6	CCC ⁺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 ÷ (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 ÷ (5년×365일)
= 1,599,452,054(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행정제재	9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p>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	--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p>●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 border="1" data-bbox="432 1671 1264 1787"> <tr> <td>구 분</td> <td>3년미만</td> <td>3년 이상 6년 미만</td> <td>6년 이상 1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p>●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p>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3% 이상</td> <td style="width: 15%;">3.0% 미만 2.5% 이상</td> <td style="width: 15%;">2.5% 미만 2.0% 이상</td> <td style="width: 15%;">2.0% 미만 1.5% 이상</td> <td style="width: 15%;">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p>● 교육훈련(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70%;">(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td> </tr> <tr> <td></td> <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td> </tr> </table>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감리원 배치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1,0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2,000세대 이상</td> </tr> <tr> <td>0명</td> <td>2.0점</td> <td>0점</td> <td>0점</td> <td>0점</td> </tr> <tr> <td>1명</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0점</td> </tr> <tr> <td>2명</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r> <td>3명</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4명이상</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r> </table>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4																																

(6) 교체빈도	7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text{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 border="1" data-bbox="443 672 1190 806"> <tr> <td>비율</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배점</td> <td>7</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p>※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p>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7) 가점	3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table border="1" data-bbox="418 1597 1246 1794"> <tr> <td>구분</td> <td>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d> <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2,000세대 이상</td> </tr> <tr> <td>1명</td> <td>1.0점</td> <td>0.7점</td> <td>0.5점</td> </tr> <tr> <td>2명</td> <td>1.0점</td> <td>1.0점</td> <td>0.7점</td> </tr> <tr> <td>3명 이상</td> <td>1.0점</td> <td>1.0점</td> <td>1.0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산출근거																				

	(1) 지역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만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지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 </tr> </table>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1) 설계용역수행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8) 적격여부	[적·부] 감리원 배치계획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p>[적·부] 업무 중첩도</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p>※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산출 근거</p>											
<p>[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p>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p>- 평가방법</p> <table border="1" data-bbox="438 1704 1259 1821"> <thead> <tr> <th>구분</th> <th>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th> <th>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h> <th>2,000세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추가인원</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body> </tabl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p>산출 근거</p>											

나. 감리자(감리회사)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18	<p>○ 평가 및 산정방법</p> <p><기본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p><배점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배점</td> <td>18 (15)</td> <td>16.5 (13.5)</td> <td>15 (12)</td> <td>13.5 (10.5)</td> </tr> <tr> <td>1천세대 이상</td> <td>12년 이상</td> <td>12년미만 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td> </tr> <tr> <td>1천세대 미만</td> <td>10년 이상</td> <td>10년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td> </tr> </table> <p>※ 면접(발표)은 실시하지 않음(면접 실시 배점 적용 없음)</p>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p>(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p>	<p>3</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분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p>-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구 분</td> <td style="width: 20%;">500 미만</td> <td style="width: 20%;">500 이상 1,500 미만</td> <td style="width: 20%;">1,500 이상 2,500 미만</td> <td style="width: 25%;">2,500 이상</td> </tr> <tr> <td>쪽 수</td> <td>15쪽 이상</td> <td>20쪽 이상</td> <td>25쪽 이상</td> <td>30쪽 이상</td> </tr> <tr> <td>부 문 (내 용)</td> <td colspan="4">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td> </tr> </table> <p>※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p>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p>산출근거</p>																			
<p>(라) 자격가점</p>	<p>(0.2)</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p>산출근거</p>																			
<p>(마) 감점</p>	<p>(-3.0)</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p>(-2) 행정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p>산출 근거</p>																			
	<p>(-1) 교체 빈도</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영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p>산출 근거</p>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 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 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 $[(47-1)/2]$ 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	---	---	---	---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	---	----	----	----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 등급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3">점 수</th> </tr> <tr> <th>특급건설기술자</th> <th>고급건설기술자</th> <th>중급건설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2</td> <td>1.8</td> <td>1.6</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 <td>중급건설기술자</td> </tr> <tr> <td>2</td> <td colspan="2">1.8</td> </tr> <tr> <td>300세대 미만</td> <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2</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7	<p>○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p> <p>< 기본자격요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p>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06 1361 1265 1637">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4">점 수</th> </tr> <tr> <th>10년 이상</th> <th>10년 미만 8년 이상</th> <th>8년 미만 6년 이상</th> <th>6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7</td> <td>6.3</td> <td>5.6</td> <td>4.9</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6년 이상</td> <td colspan="2">6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7</td> <td colspan="2">6.3</td> <td>5.6</td> </tr> <tr> <td rowspan="2">300세대 미만</td> <td colspan="2">2년 이상</td> <td colspan="2">2년 미만</td> </tr> <tr> <td colspan="2">7</td> <td colspan="2">6.3</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 자격가점	(0.1)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p>※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p>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 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p>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p>- 공무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 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경 령</td> <td>10년 이상</td> <td>10년미만 5년이상</td> <td>5년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4점</td> <td>2.5점</td> <td>1점</td> </tr> </table> <p>※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 여야 함</p>	경 령	10년 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경 령	10년 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산출근거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다) 감점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p>-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 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p>										
	(-1) 행정 제재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 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 근거	<p>- 영업정지기간 등 : (월)</p> <p>- 합산벌점 : (점)</p>										
	(-1) 교체 빈도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 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p> <p>※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 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 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p>										
산출 근거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
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착공일	준공 (예정)일	주택건설 공사	건축공사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 그외는 “80” %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우선순위 3개업체)**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명	분야	등급자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고
	사업명	기간				
신규 감리 원						
		소계				년

<감리원 배치 계획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급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1	2	3	4	1	2	3	4	1	2	3	4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전반기
		○○○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신규	건축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정 인·월 수 : 인·월

- 투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상기 서식에 맞추어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법정인·월수 산정근거 제시 바람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공사	14,065,929			14,065,929
		소계	281,442,900	245,224,209	-	36,218,691
	일반관리비	20,272,690	17,663,811		2,608,879	
	이 윤	14,192,238	12,365,849		1,826,389	
	계	315,907,828	275,253,869	-	40,653,959	
간접비	설계비	5,333,869		5,333,869		
	감리비	7,398,592		7,398,592		
	일반분양시설경비	16,689,849		16,689,849		
	분담금 및 부담금	18,754,572		18,754,572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613,777		59,613,777		
	계	107,790,659	-	107,790,659	-	
대지비	156,632,987		156,632,987			
부가가치세액	6,452,261		6,452,261			
총사업비 계	586,783,735	275,253,869	270,875,907	40,653,959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15,631,598	15,631,598			
		흙막이공사	13,759,102	13,759,102			
		비탈면보호공사	186,814	186,814			
		옹벽공사	1,303,356	1,303,356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312,805	312,805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316,390	1,316,390			
		도로포장공사	2,624,091	2,624,091			
		교통안전시설물공사	391,007	391,007			
		정화조시설공사	191,158	191,158			
		조경공사	4,778,974	4,778,974			
		부대시설공사	2,949,930	2,949,930			
		소계		43,445,225	43,445,225	-	-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2,725,781	2,725,781			
		가시설물공사	914,691	914,691			
		지정 및 기초공사	3,622,179	3,622,179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102,079,629	102,079,629			
		용접공사	-	-			
		조적공사	1,774,502	1,774,502			
		미장공사	6,402,843	6,402,843			
		단열공사	5,030,805	5,030,805			
		방수방습공사	4,189,288	4,189,288			
		목공사	6,165,023	6,165,023			
		가구공사	11,140,947	11,140,947			
		금속공사	4,646,634	4,646,634			
		지붕 및 흙통공사	1,463,507	1,463,507			
		창호공사	9,988,435	9,988,435			
		유리공사	2,597,725	2,597,725			
		타일공사	3,658,767	3,658,767			
		돌공사	4,921,042	4,921,042			
		도장공사	1,719,620	1,719,620			
		도배공사	1,719,620	1,719,620			
	수장공사	5,506,445	5,506,445				
	주방용구공사	841,516	841,516				
	잡공사	1,829,383	1,829,383				
	소계		182,938,382	182,938,382	-	-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2,138,408	2,138,408			
		급탕설비공사	1,691,886	1,691,886			
		오배수 및 통기설비	2,914,641	2,914,641			
		위생기구공사	2,121,451	2,121,451			
		승강기기계공사	3,381,888	3,381,888			
		난방설비공사	1,446,958	1,446,958			
		가스설비공사	1,705,074	1,705,074			
자동제어설비		276,956	276,956				
특수설비공사		3,163,340	3,163,340				
소계		18,840,602	18,840,602	-	-		
		전기(15개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13개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2개공사)	14,065,929			14,065,929	
		일반관리비	20,272,690	17,663,811		2,608,879	
		이윤	14,192,238	12,365,849		1,826,389	
		총공사비	315,907,828	275,253,869	-	40,653,959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정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여수시 공고 제2025-3886호에 대한 정정공고임.(관련 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공고일 기재, 공고기간 정정

2025. 12. 31.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재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공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계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재지구 A3
- 대지면적 : 52,617.0000㎡
- 연면적 : 208,864.6781㎡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지하5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1,095세대
- 공사기간 : 2026. 03. 09. ~ 2029. 05. 08.(38개월)
-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 ~ 2029. 05. 08.(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업비

- 총사업비: 586,783,735천원
- 대지비: 156,632,987천원
- 총공사비: 315,907,82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감리 대상 공사비 : 15,884,980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300,022,848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비용임.
 -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감리대가 : 1,177,721,088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42,389,455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2026												2027												2028												2029													
년도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비고								
전체공정																																																		2026.03.09.~2029.05.08. (38개월)	
전기공사																																																		2026.05.09.~2029.05.08. (36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사자원부고시 제2023-36호(2023. 3. 2.))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함.(단, 8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

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임감날인)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1.총괄표, 비교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3]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4)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미제출
			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작업기법			구분					미제출
			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 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하.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 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1.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사·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가. 지 역		1.5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5	다. 부실벌점		-5			
합 계							
<p>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교란에 기재할 것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 참여감리원		50																																											
가. 참 여 감리원	(1) 책 임 감리원 (가)등급	[25]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나)경력및 실적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h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td> </tr> <tr>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이상</td> <td>8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1,200세대이상</td> <td>15년이상</td> <td>15년미만 12년이상</td> <td>12년미만 9년이상</td> <td>9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2</td> <td>19</td> <td>16</td> <td>13</td> </tr> </tbody> </table> <p>※[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1,200세대이상</td> </tr> </thead> <tbody> <tr> <td>년 수</td> <td>2년</td> <td>3년</td> <td>4년</td> </tr> </tbody> </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 조 감리원 (가)등급	(나)경력및 실적	[14]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14)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h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 colspan="2">2년미만</td> </tr> <tr> <td></td> <td>14</td> <td>12</td> <td colspan="2">10</td> </tr> <tr> <td>1,200세대이상</td>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4</td> <td>12</td> <td>10</td> <td>8</td> </tr> </tbody> </table> <p>※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비상주 감리원 (가) 등급	[11]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점기준											
	(나) 경력 및 실적	(9)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7년이상</td> <td>7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9</td> <td>7</td> <td>5</td> <td>3</td> </tr> </table> <p>※[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산출근거		(1) 등 급 :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산출근거		○ 연면적 :	m ²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1)입찰참가 제한, 영 업정지 (가)감리 업체 (나)참여 감리원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산출근거		(2) 참여감리원 :												

	(2)재정상태 건설도	[3]																			
	(가) 자본 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이하</td> <td>5년초과 10년이하</td> <td>10년초과 20년이하</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r> <td>전력신기술</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p>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p>												
		<p>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p>												
		<p>다. 교육실적</p>	<p>-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점</p>											
			<p>-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점</p>											
마.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6)	<p>○ 상주감리원(6점)</p> <p>-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책임감리원</td> <td>보조감리원</td> </tr> <tr> <td>점 수</td> <td>4</td> <td>2</td> </tr> </table> <p>※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2) 비상주 감리원	(4)	<p>○ 비상주감리원(4점)</p> <p>-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p> <p>-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6개소미만</td> <td>6개소</td> <td>7개소</td> <td>8개소</td> <td>9개소이상</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p>※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p>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p>가. 상주감리원 :</p>												
산출근거		<p>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p>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5)	<p>○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교 체 빈 도 (%)</td> <td>10%미만</td> <td>10%이상 20%미만</td> <td>20%이상 30%미만</td> <td>3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td> <td>1.5</td> <td>0</td> </tr> </table>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 감리원	(2.5)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p>※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p>												
		<p>가. 감리업체 : = %</p>												
산출근거		<p>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p>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 작업 기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점	(1) 지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 부실벌점 :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 적 (최근 3년)	A ÷ 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 가. 결산서 작성사유 : _____
- 나. 결산서의 종류 : _____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_____
- 라. 기타 _____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연락처 : _____
 공인회계사, 세무사 : _____ (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p>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p>위 감리원은 현재 ()월간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도지사 인</p>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책임 감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u>소계</u>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 년		
합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보조 감리 원							
	합계				일 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비상 주 감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u>소계</u>				일 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 년		
합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연면적 (㎡)		적용요율 (%)		환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원 배치 계획 표

○ 용역명 :

○ 전기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2018년												2019년												2020년						개월	비고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채임	○○○	특급																									21	예시						
보조	○○○	-																																
	○○○	-																																
비상주	○○○	-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3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3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공사	14,151,959	14,151,959		-
		정보통신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공사	14,065,929			14,065,929
		소계	281,442,900	14,151,959	-	267,290,941
	일반관리비	20,272,690	1,019,384		19,253,306	
	이 윤	14,192,238	713,637		13,478,601	
	계	315,907,828	15,884,980	-	300,022,848	
간접비	설계비	5,333,869		5,333,869		
	감리비	7,398,592		7,398,592		
	일반분양시설경비	16,689,849		16,689,849		
	분담금 및 부담금	18,754,572		18,754,572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613,777		59,613,777		
	계	107,790,659	-	107,790,659	-	
대지비	156,632,987		156,632,987			
부가가치세액	6,452,261		6,452,261			
총사업비 계	586,783,735	15,884,980	270,875,907	300,022,848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23개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9개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 (15개공사)	옥외전력간선공사		1,976,458	1,976,458		
		옥외외등설치공사		313,752	313,752		
		CABLE TRAY공사		324,321	324,321		
		단위세대 전기공사		4,300,446	4,300,446		
		옥내전력간선공사		1,830,631	1,830,631		
		옥내공용부분전기공사		562,759	562,759		
		피뢰침 및 접지공사		285,301	285,301		
		지하주차장 전기공사		976,184	976,184		
		수변전공사		3,164,773	3,164,773		
		기계실 전력간선 및 동력공사		130,251	130,251		
		전기,기계실 전등전열공사		26,316	26,316		
		부대복리시설 전력간선공사		39,923	39,923		
		부대복리시설 전등전열공사		97,862	97,862		
		경비실 전등전열공사		1,948	1,948		
		근린생활 전기공사		121,034	121,034		
	소계		14,151,959	14,151,959	-	-	
	정보통신(13개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2개공사)		14,065,929			14,065,929		
일반관리비			20,272,690	1,019,384		19,253,306	
이 윤			14,192,238	713,637		13,478,601	
총 공사비			315,907,828	15,884,980	-	300,022,848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8개월)
 ■ 진 기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6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전체공정																																												2026.03.09.~2029.05.08. (38개월)
전기공사																																												2026.05.09.~2029.05.08. (36개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정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3884호에 대한 정정공고임.(관련 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공고일 기재, 공고기간 정정
- ▶ 2. 사업내역, 바. 사업비 중 총공사비 단위 정정(원→천원)

2025. 12. 31.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재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 공 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재지구 A3
- 대지면적 : 52,617.0000㎡
- 연 면 적 : 208,864.6781㎡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지하5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1,095세대
- 공사기간 : 2026. 03. 09. ~ 2029. 05. 08.(38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 ~ 2029. 05. 08.(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586,783,735천원
- 대 지 비 : 156,632,987천원
- 총공사비 : 315,907,82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1) 감리 대상 공사비 : 15,788,414천원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300,119,414천원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1,996,383,739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936,492,227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38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8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6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전체공정	[Redacted]																																																2026.03.09.~2029.05.08. (38개월)
소방공사	[Redacted]																																																2026.05.09.~2029.05.08. (36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교를 참조 바랍니다.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서로 같음하오니 제출하지 않습니다.

-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 6)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6) 업무중첩도
 -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7) 교체빈도
 -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8) 작업계획 및 기법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증명서, 감리원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 10) 증빙자료
 -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 12) 그 밖에 1)~11)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모집공고일)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6)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 7)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 8)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 9)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10)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4)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작업기법			구분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하.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거.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내용	위치	대지면적 m ²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m ²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임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p>○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p> <p>○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 <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2</td> <td>11</td> <td>10</td> <td>9</td> <td>8</td> </tr> </tbody> </table> <p>○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 <th>등 급</th> <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00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특급</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고급</td> <td>8 이상</td> <td>8 미만 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td> </tr> <tr> <td rowspan="3">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특급</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고급</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 rowspan="3">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특급</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고급</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특급</td> <td>4 이상</td> <td>4 미만</td> <td>3 미만</td> <td>2 미만</td> <td>1 미만</td> </tr> </tbody> </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1 미만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1 미만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30] (-)																																																																																																												
	(2) 소방분야 경력	(12)																																																																																																												
	(3) 참여분야 경력	(12)																																																																																																												

			3 이상	2 이상	1 이상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 1)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 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 <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 </tr> <tr> <td>1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7</td> <td>7.4</td> <td>7.1</td> <td>6.8</td> </tr> </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2) 소방분야 경력	(8)	(8)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0</td> <td>7.7</td> <td>7.4</td> <td>7.1</td> </tr> </table>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3) 참여분야 경력	(8)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0</td> <td>3.8</td> <td>3.6</td> <td>3.4</td> </tr> </table>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산출근거 (별첨 2)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점 수</td> </tr> <tr> <td>100% 이상</td> <td>10</td> </tr> <tr> <td>80% 이상 100% 미만</td> <td>9</td> </tr> <tr> <td>60% 이상 80% 미만</td> <td>8</td> </tr> <tr> <td>40% 이상 60% 미만</td> <td>7</td> </tr> <tr> <td>40% 미만</td> <td>6</td> </tr> </table>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산출근거 (별첨 3)		누계실적금액 : 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p>○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p>○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p> <p>○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p> <p>-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 이상</td> <td>100% 미만 75% 이상</td> <td>75% 미만 50% 이상</td> <td>5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p>○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p> <p>-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 이상</td> <td>100% 미만 75% 이상</td> <td>75% 미만 50% 이상</td> <td>5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p>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p> <p>참여감리원 :</p> <p>자본비율 :</p> <p>유동비율 :</p>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0 (4)	<p>○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p> <p>-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p> <p>-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 이하</th> <th>5년 초과 10년 이하</th> <th>10년 초과 20년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p> <p>○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p>○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 이상</th> <th>3.0% 미만 2.5% 이상</th> <th>2.5% 미만 2.0% 이상</th> <th>2.0% 미만 1.5% 이상</th> <th>1.5%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4</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body> </table>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p>○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p> <p>-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p> <p>-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p>													
산출근거			<p>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p> <p>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p> <p>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p>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 중첩도		10 (10)	<p>○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책임감리원</td> <td>보조감리원</td> </tr> <tr> <td>점 수</td> <td>7</td> <td>3</td> </tr> </table> <p>-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 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산출근거			<p>책임감리원 :</p> <p>보조감리원 :</p>																												
바. 교체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p>○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 (%)</td> <td>10% 미만</td> <td>10% 이상 20% 미만</td> <td>20% 이상 30% 미만</td> <td>30% 이상</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td> <td>1.5</td> <td>0</td> </tr> </table>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p>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산출근거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p>○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p>○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절대평가 :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 실 별 점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 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 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시작일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 4]

감리원 배치 계획 표

○ 용역명 :

○ 소방공사기간 : 20 . . ~2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입일자																		개월	비고				
			연도																							
			월	일																						
책임	○ ○ ○ ○																									
보조	○ ○ ○ ○																									
비상주	○ ○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5억미만	30	70	$7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 | 는

절대값

표시임.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공사	14,065,929	14,065,929		
		소계	281,442,900	14,065,929	-	267,376,971
	일반관리비		20,272,690	1,013,187		19,259,503
	이 윤		14,192,238	709,298		13,482,940
	계		315,907,828	15,788,414	-	300,119,414
간접비	설계비		5,333,869		5,333,869	
	감리비		7,398,592		7,398,592	
	일반분양시설경비		16,689,849		16,689,849	
	분담금 및 부담금		18,754,572		18,754,572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613,777		59,613,777	
	계		107,790,659	-	107,790,659	-
대지비		156,632,987		156,632,987		
부가가치세액		6,452,261		6,452,261		
총사업비 계		586,783,735	15,788,414	270,875,907	300,119,414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43,445,225			43,445,225
		건축(23개공사)	182,938,382			182,938,382
		기계설비(9개공사)	18,840,602			18,840,602
		전기(15개공사)	14,151,959			14,151,959
		정보통신(13개공사)	8,000,803			8,000,803
		소방설비(2개공사)	14,065,929		14,065,929	
		일반관리비	20,272,690	1,013,187		19,259,503
		이 윤	14,192,238	709,298		13,482,940
		총 공사비	315,907,828	15,788,414	-	300,119,414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8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5월 08일 (36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전체공정																																																	2026.03.09.~2029.05.08. (38개월)
소방공사																																																	2026.05.09.~2029.05.08. (36개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정정)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3887호에 대한 정정공고임.(관련 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공고일 기재, 공고기간 정정

2025. 12. 31.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재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공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계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재지구 A4
- 대지면적 : 26,585.0000㎡
- 연면적 : 103,603.8763㎡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3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584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3. 08.(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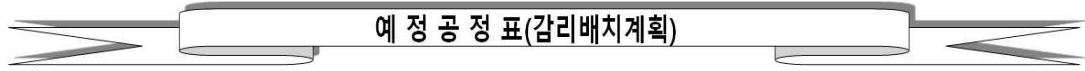
- 총사업비 : 294,055,609천원
- 대지비 : 79,349,382천원
- 총공사비 : 156,700,86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 : 133,577,970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23,122,898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3,098,875,326원(건축공사비의 2.3199%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3,005,909,066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전체공정	[Redacted]																																																2026.03.09.~2029.03.08. (36개월)
건축공사	[Redacted]																																																2026.03.09.~2029.03.08. (36개월)
구조체공사	[Redacted]												[Redacted]																																				2026.08.01.~2028.02.29. (19개월)
토목공사	[Redacted]																																																2026.03.09.~2029.05.08. (36개월)
설비공사	[Redacted]												[Redacted]																																				2026.05.09.~2029.03.08. (34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한 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 점 처리함.
- 3)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비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하나, 당해 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 처리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해당없음

8-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① 사업주체 “여수소제피에프브이(주)” 외 1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② 시공자 “중흥토건(주)” 외 3인의 행정처분 이력
 -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0.41점
-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결과

나.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 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 2024. 10. 8.)」 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7)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 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10.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별지 제1호 서식]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⑩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

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해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 함.

6)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 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8) 감리원배치계획

: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9)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 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

증명서(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분야별 세부평가서 : 분야별 세부평가서 및 별첨 제출

다. 유의사항

-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 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경력·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6)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7)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통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 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고,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건축, 건축, 설비, 토목분야 순서로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5번째부터는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를 초과하여 배치하는 경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마지막 1명은 부분 배치 가능합니다.
(단, 신규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 가능함)
- 3)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배치하여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 4)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급의 일일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

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당해 공사의 착공일·감리수행일(착공일과 감리수행일자가 상이한 경우 착공일 우선 적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주한 금액은 공사진척률에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3)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 산정 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공무원 등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공동주택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100%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건설공사, 토목건설공사 또는 기타설비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를 감리원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차.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 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

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종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공종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거.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본 공고문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기준 및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 너.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지정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에 따라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머.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최근 1년간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실조회(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감리원 배치기간의 감리업무 중첩도는 모집공고일 이전에 협회에 신고한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감리원 배치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첩도에 포함합니다.

어.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며, 공고내용,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제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 . .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명]

[별지 제1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층, 동, 세대			m ²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	전화번호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대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m²)]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회 사)	①재무상태 건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
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서식]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가항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훈련	2.5 0.5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 리 원	총괄 감리 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면접(발표)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 별 감리 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 주 감 리 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7210mm×297mm[백상지(80g/㎡)]

분야별 세부평가(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 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40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1) 재무상태 건 실 도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점수</th> <th style="width: 20%;">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20%;">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55%;">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td> <td style="text-align: center;">AAA</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A⁺, AA⁰, AA⁻</td> <td style="text-align: center;">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⁰,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A2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2</td> <td style="text-align: center;">BBB⁺</td> <td style="text-align: center;">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B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A3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B⁻</td> <td style="text-align: center;">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4</td> <td style="text-align: center;">BB⁺, BB⁰</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⁰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⁰</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 B⁰, B⁻</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⁰,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d style="text-align: center;">C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C 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body> </table>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 , AA ⁰ , AA ⁻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 ⁰	A3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3.4	BB ⁺ , BB ⁰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 ⁻	B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에 준하는 등급)	B ⁺ , B ⁰ ,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2.6	CCC ⁺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 , AA ⁰ , AA ⁻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 AA ⁰ , AA ⁻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 에 준하는 등급)																																													
	A ⁰	A2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⁰ 에 준하는 등급)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BBB ⁰	A3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에 준하는 등급)																																													
3.4	BB ⁺ , BB ⁰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 BB ⁰ 에 준하는 등급)																																													
	BB ⁻	B 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에 준하는 등급)																																													
	B ⁺ , B ⁰ ,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 B ⁰ , B ⁻ 에 준하는 등급)																																													
2.6	CCC ⁺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 ÷ (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 ÷ (5년×365일)
= 1,599,452,054(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 행정제재	9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p>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	--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p>●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3년미만</td> <td>3년 이상 6년 미만</td> <td>6년 이상 10년 미만</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p>●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p>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3% 이상</td> <td style="width: 15%;">3.0% 미만 2.5% 이상</td> <td style="width: 15%;">2.5% 미만 2.0% 이상</td> <td style="width: 15%;">2.0% 미만 1.5% 이상</td> <td style="width: 15%;">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p>● 교육훈련(0.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교육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70%;">(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td> </tr> <tr> <td></td> <td>(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td> </tr> </table>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5) 신규감리원 배치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구분</td> <td style="width: 15%;">1,0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 style="width: 15%;">2,000세대 이상</td> </tr> <tr> <td>0명</td> <td>2.0점</td> <td>0점</td> <td>0점</td> <td>0점</td> </tr> <tr> <td>1명</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0점</td> </tr> <tr> <td>2명</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r> <td>3명</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1.5점</td> </tr> <tr> <td>4명이상</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d>2.0점</td> </tr> </table>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 4																																

(6) 교체빈도	7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영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영역에서의 교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text{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 border="1" data-bbox="445 672 1192 806"> <tr> <td>비율</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 이상</td> </tr> <tr> <td>배점</td> <td>7</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p>※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p>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배점	7	5	3	1	0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7) 가점	3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table border="1" data-bbox="419 1597 1246 1794"> <tr> <td>구분</td> <td>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td> <td>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d> <td>2,000세대 이상</td> </tr> <tr> <td>1명</td> <td>1.0점</td> <td>0.7점</td> <td>0.5점</td> </tr> <tr> <td>2명</td> <td>1.0점</td> <td>1.0점</td> <td>0.7점</td> </tr> <tr> <td>3명 이상</td> <td>1.0점</td> <td>1.0점</td> <td>1.0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산출근거																				

	(1) 지역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만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택건설지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 </tr> </table>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1) 설계용역수행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8) 적격여부	[적·부] 감리원 배치계획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적·부] 업무 중첩도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 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산출 근거											
[적·부] 감리원 추가 의무 배치	<p>○ 평가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table border="1" data-bbox="438 1704 1259 1821"> <thead> <tr> <th>구분</th> <th>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th> <th>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th> <th>2,000세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추가인원</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r> </tbody> </table>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산출 근거											

나. 감리자(감리회사)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산출근거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18	<p>○ 평가 및 산정방법</p> <p><기본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p><배점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배점</td> <td>18 (15)</td> <td>16.5 (13.5)</td> <td>15 (12)</td> <td>13.5 (10.5)</td> </tr> <tr> <td>1천세대 이상</td> <td>12년 이상</td> <td>12년미만 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td> </tr> <tr> <td>1천세대 미만</td> <td>10년 이상</td> <td>10년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td> </tr> </table> <p>※ 면접(발표)은 실시하지 않음(면접 실시 배점 적용 없음)</p>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p>(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p>	<p>3</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절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분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세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 이상 1,5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 이상 2,500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쪽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쪽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쪽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쪽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쪽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 문 (내 용)</td> <td colspan="4">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td> </tr> </table> <p>※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p>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분	500 미만	500 이상 1,500 미만	1,500 이상 2,500 미만	2,500 이상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산출근거																			
<p>(라) 자격가점</p>	<p>(0.2)</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p>(마) 감점</p>	<p>(-3.0)</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p>(-2) 행정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산출근거																			
	<p>(-1) 교체 빈도</p>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영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 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 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 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 $[(47-1)/2]$ 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	---	---	---	---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	---	----	----	----	---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 등급	2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3">점 수</th> </tr> <tr> <th>특급건설기술자</th> <th>고급건설기술자</th> <th>중급건설기술자</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2</td> <td>1.8</td> <td>1.6</td> </tr> <tr> <td>1천세대 미만</td> <td colspan="2">고급건설기술자 이상</td> <td>중급건설기술자</td> </tr> <tr> <td>300세대 이상</td> <td>2</td> <td colspan="2">1.8</td> </tr> <tr> <td>300세대 미만</td> <td colspan="3">중급건설기술자 이상</td> </tr> <tr> <td></td> <td></td> <td colspan="3">2</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300세대 이상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공사규모	점 수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천세대 이상	2	1.8	1.6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300세대 이상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7	<p>○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p> <p>< 기본자격요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p>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의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 <table border="1" data-bbox="406 1361 1265 1637"> <thead> <tr> <th rowspan="2">공사규모</th> <th colspan="4">점 수</th> </tr> <tr> <th>10년 이상</th> <th>10년 미만 8년 이상</th> <th>8년 미만 6년 이상</th> <th>6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1천세대 이상</td> <td>7</td> <td>6.3</td> <td>5.6</td> <td>4.9</td> </tr> <tr> <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 <td>6년 이상</td> <td colspan="2">6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7</td> <td colspan="2">6.3</td> <td>5.6</td> </tr> <tr> <td rowspan="2">300세대 미만</td> <td colspan="2">2년 이상</td> <td colspan="2">2년 미만</td> </tr> <tr> <td colspan="2">7</td> <td colspan="2">6.3</td> </tr> </tbody> </table>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공사규모	점 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7	6.3	5.6	4.9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5.6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7		6.3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설비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다) 자격가점	(0.1)	<p>○ 평가 및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p>※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p>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라) 감점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 근거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0.5) 교체 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 근거	건축 : 토목 : 설비 :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 등급 :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p>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p>- 공무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 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p>※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10년 이상</td> <td>10년미만 5년이상</td> <td>5년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4점</td> <td>2.5점</td> <td>1점</td> </tr> </table> <p>※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 여야 함</p>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산출근거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다) 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 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 제재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 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산출 근거	<p>- 영업정지기간 등 : (월)</p> <p>- 합산벌점 : (점)</p>										
	(-1) 교체 빈도	<p>-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 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p> <p>※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 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 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p>										
	산출 근거											

(4)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
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 호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우선순위 3개업체)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우선순위 3개업체)**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명	분야	등급자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고
	사업명	기간				
신규 감리 원						
		소계				년

<감리원 배치 계획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급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년				년				년							
				1	2	3	4	1	2	3	4	1	2	3	4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전반기	
		○○○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신규	건축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추가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건축	○○○																- 구조체 공사배치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정 인·월 수 : 인·월

- 투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상기 서식에 맞추어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으로 제출가능하며, 법정인·월수 산정근거 제시 바람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공사	5,418,431			5,418,431
		소계	131,092,003	114,137,902	-	16,954,101
	일반관리비		13,528,866	10,269,962		3,258,904
	이 윤		12,079,999	9,170,106		2,909,893
	계		156,700,868	133,577,970	-	23,122,898
간접비	설계비		2,778,928		2,778,928	
	감리비		4,150,000		4,150,000	
	일반분양시설경비		8,363,803		8,363,803	
	분담금 및 부담금		9,398,500		9,398,500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3,254,269		33,254,269	
	계		57,945,500	-	57,945,500	-
대지비		79,349,382		79,349,382		
부가가치세액		59,859		59,859		
총사업비 계		294,055,609	133,577,970	137,354,741	23,122,898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4,493,894	4,493,894		
		흙막이공사	1,309,350	1,309,350		
		비탈면보호공사	52,325	52,325		
		옹벽공사	634,904	634,904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1,005,264	1,005,264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65,060	365,060		
		도로포장공사	640,072	640,072		
		교통안전시설물공사	85,180	85,180		
		정확조시설공사	36,506	36,506		
		조경공사	3,180,893	3,180,893		
		부대시설공사	365,060	365,060		
		소계		12,168,508	12,168,508	-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5,266,611	5,266,611		
		가시설물공사	1,968,510	1,968,510		
		지정 및 기초공사	3,589,262	3,589,262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46,258,967	46,258,967		
		용접공사	-	-		
		조적공사	895,911	895,911		
		미장공사	3,169,754	3,169,754		
		단열공사	-	-		
		방수방습공사	1,609,119	1,609,119		
		목공사	5,760,041	5,760,041		
		가구공사	1,078,778	1,078,778		
		금속공사	858,274	858,274		
		지붕 및 흙통공사	-	-		
		창호공사	4,077,509	4,077,509		
		유리공사	1,496,676	1,496,676		
		타일공사	2,658,803	2,658,803		
		돌공사	348,978	348,978		
		도장공사	1,559,452	1,559,452		
		도배공사	826,576	826,576		
		수장공사	1,469,469	1,469,469		
	주방용구공사	719,185	719,185			
	잡공사	7,662,299	7,662,299			
	소계		91,274,174	91,274,174	-	-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2,401,097	2,401,097		
		급탕설비공사	2,100,960	2,100,960		
		오배수 및 통기설비	2,290,120	2,290,120		
		위생기구공사	904,468	904,468		
		승강기기계공사	1,774,074	1,774,074		
		난방설비공사	498,470	498,470		
		가스설비공사	473,867	473,867		
자동제어설비		155,983	155,983			
특수설비공사		96,181	96,181			
소계		10,695,220	10,695,220	-	-	
		전기(15개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13개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2개공사)	5,418,431			5,418,431
		일반관리비	13,528,866	10,269,962		3,258,904
		이윤	12,079,999	9,170,106		2,909,893
		총공사비	156,700,868	133,577,970	-	23,122,898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전체공정																																																	2026.03.09.~2029.03.08. (36개월)
건축공사																																																	2026.03.09.~2029.03.08. (36개월)
구조체공사																															2026.08.01.~2028.02.29. (19개월)																		
토목공사																																																	2026.03.09.~2029.05.08. (36개월)
설비공사																																																	2026.05.09.~2029.03.08. (34개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정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3888호에 대한 정정공고임.(관련 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공고일 기재, 공고기간 정정
- ▶ 2. 사업내역, 바. 사업비 중 총공사비 단위 정정(원→천원)

2025. 12. 31.

여수시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재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공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 조성준, 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 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 유영걸 (☎062)220-2500)

라. 설계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재지구 A4
- 대지면적 : 26,585.0000㎡
- 연면적 : 103,603.8763㎡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3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584세대
- 공사기간 : 2026. 03. 09. ~ 2029. 03. 08. (36개월)
※ 소방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 ~ 2029. 03. 08. (3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업비

- 총사업비 : 294,055,609천원
- 대지비 : 79,349,382천원
- 총공사비 : 156,700,86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감리 대상 공사비 : 7,814,152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8,886,716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공사의 비용임.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첨부자료 참조

사. 감리대가 : 1,223,593,857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1,186,886,041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4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전체공정	[Blank]																																				2026.03.09.~2029.03.08. (36개월)										
소방공사	[Blank]																																		2026.05.09.~2029.03.08. (34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 수행금액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공동주택에 한하며 수행실적의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있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함,
-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을 이야기하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교를 참조 바랍니다.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인 · 월 산출은 소방시설공사업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선정 방법

-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5)
- 2)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4)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10호 서식] - 나라장터 입찰서로 같음하오니 제출하지 않습니다.

- 5)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 6) 감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 2)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실안임)
 -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6) 업무중첩도
 -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7) 교체빈도
 -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8) 작업계획 및 기법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증명서, 감리원 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증명서)
- 10) 증빙자료
 -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11)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4 서식 참고하여 작성)
- 12) 그 밖에 1)~11)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 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모집공고일)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6)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 7)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 8)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3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 9)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10)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함.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함.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4) 교육: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작업기법			구분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함.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하.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함.

거.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계획내용	위치	대지면적 m ²	착공일		
		사업내용 층, 동, 세대	연면적 m ²	준공일		
	설계업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감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참여감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등급(기계)	등급(전기)	감리원수첩번호
	책임					
	보조					
	보조					
	보조					
	보조					

「소방시설공사법」 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② 행정제재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⑤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⑥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⑦ 지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⑧ 소속근무처	감리원 보유증명서
	⑨ 등급 / 경력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감리원 경력증명서
	⑪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⑫ 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p>「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알림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신청인	선정권자	비고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12		
			참여분야경력	12		
		보조감리원	등급	-		
			소방분야경력	8		
			참여분야경력	8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	10	책임감리원		7		
		보조감리원		3		
교체빈도	5	감리업체		2.5		
		참여감리원		2.5		
작업계획 및 기법	5	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		
가점	2	지역		1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합계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50	<p>○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p> <p>○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 <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2</td> <td>11</td> <td>10</td> <td>9</td> <td>8</td> </tr> </tbody> </table> <p>○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h> <th>등 급</th> <th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00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특급</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고급</td> <td>8 이상</td> <td>8 미만 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td> </tr> <tr> <td rowspan="3">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특급</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고급</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 rowspan="3">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특급 (소방 기술사)</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특급</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고급</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특급</td> <td>4 이상</td> <td>4 미만</td> <td>3 미만</td> <td>2 미만</td> <td>1 미만</td> </tr> </tbody> </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1 미만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12		11	10	9	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미만	2 미만	1 미만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30] (-)																																																																																																												
	(2) 소방분야 경력	(12)																																																																																																												
	(3) 참여분야 경력	(12)																																																																																																												

		3 이상	2 이상	1 이상		
	고급	5 이상 4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12	11	10	9	8

(6)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등 급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	특급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6	5.7	5.4	5.1	4.8

산출근거
(별첨 1)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 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8)																																						
	(2) 소방분야 경력			<table border="1"> <tr> <td>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td> <td colspan="5">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td> </tr> <tr> <td>100억원 이상</td> <td>7 이상</td> <td>7 미만 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td> </tr> <tr> <td>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td> <td>6 이상</td> <td>6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td> </tr> <tr> <td>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3억원 미만</td> <td>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td> <td>7.7</td> <td>7.4</td> <td>7.1</td> <td>6.8</td> </tr> </table>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8	7.7	7.4	7.1	6.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8.0</td> <td>7.7</td> <td>7.4</td> <td>7.1</td> </tr> </table>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8.0	7.7	7.4	7.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0</td> <td>3.8</td> <td>3.6</td> <td>3.4</td> </tr> </table>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4.0	3.8	3.6	3.4																																				
산출근거 (별첨 2)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감리대가금액 기준) 대비 누계실적평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점 수</td> </tr> <tr> <td>100% 이상</td> <td>10</td> </tr> <tr> <td>80% 이상 100% 미만</td> <td>9</td> </tr> <tr> <td>60% 이상 80% 미만</td> <td>8</td> </tr> <tr> <td>40% 이상 60% 미만</td> <td>7</td> </tr> <tr> <td>40% 미만</td> <td>6</td> </tr> </table>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산출근거 (별첨 3)		누계실적금액 : 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10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설도 가) 자본비율	[3] (1)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나) 유동비율	(2)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산출근거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 이상</td> <td>100% 미만 75% 이상</td> <td>75% 미만 50% 이상</td> <td>5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 이상</td> <td>100% 미만 75% 이상</td> <td>75% 미만 50% 이상</td> <td>5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입찰참가제한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10 (4)	<p>○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p> <p>-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p> <p>-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 이하</th> <th>5년 초과 10년 이하</th> <th>10년 초과 20년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p>○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p> <p>○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4)	<p>○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 이상</th> <th>3.0% 미만 2.5% 이상</th> <th>2.5% 미만 2.0% 이상</th> <th>2.0% 미만 1.5% 이상</th> <th>1.5%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4</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body> </table>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p>○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p> <p>-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p> <p>-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p>													
산출근거			<p>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p> <hr/> <p>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p> <hr/> <p>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p>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 중첩도		10 (10)	<p>○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책임감리원</td> <td>보조감리원</td> </tr> <tr> <td>점 수</td> <td>7</td> <td>3</td> </tr> </table> <p>-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 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7	3																													
산출근거			<p>책임감리원 :</p> <p>보조감리원 :</p>																												
바. 교체빈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p>○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 (%)</td> <td>10% 미만</td> <td>10% 이상 20% 미만</td> <td>20% 이상 30% 미만</td> <td>30% 이상</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td> <td>1.5</td> <td>0</td> </tr> </table>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p>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산출근거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p>○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p>○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절대평가 :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산출근거		지 역 : 책임감리원 : 부 실 별 점 :

[별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 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 2]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처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시작일	종료일	경력일수
소 계				일 년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 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시작일	종료 (예정)일	감리비	기성실적 (비율)	환산 비율	공사종류 요율	
합 계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 공사종류요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5억미만	30	70	$7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 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추정가격 10억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 | 는

절대값

표시임.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공사	5,418,431	5,418,431		
		소계	131,092,003	5,418,431	-	125,673,572
	일반관리비		13,528,866	1,265,632		12,263,234
	이 윤		12,079,999	1,130,089		10,949,910
	계		156,700,868	7,814,152	-	148,886,716
간접비	설계비		2,778,928		2,778,928	
	감리비		4,150,000		4,150,000	
	일반분양시설경비		8,363,803		8,363,803	
	분담금 및 부담금		9,398,500		9,398,500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3,254,269		33,254,269	
	계		57,945,500	-	57,945,500	-
대지비		79,349,382		79,349,382		
부가가치세액		59,859		59,859		
총사업비 계		294,055,609	7,814,152	137,354,741	148,886,716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23개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9개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15개공사)		8,770,823			8,770,823
	정보통신(13개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2개공사)		5,418,431	5,418,431		
일반관리비			13,528,866	1,265,632		12,263,234
이 윤			12,079,999	1,130,089		10,949,910
총 공사비			156,700,868	7,814,152	-	148,886,716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 소 방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4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전체공정																																																	2026.03.09.~2029.03.08. (36개월)
소방공사																																																	2026.05.09.~2029.03.08. (34개월)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정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3889호에 대한 정정공고임.(관련 서류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공고일 기재, 공고기간 정정

2025. 12. 31.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5. 1. 6.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여수소재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병엽,이탁기 (☎062)510-2114),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다. 시공자 : 중흥토건(주) 대표자 이경호 (☎062)510-2237),
우미건설(주) 대표자 배영한,조성준,김성철 (☎02)6914-1502),
아주건설(주) 대표자 김수홍,김용환 (☎061)381-6323),
남해종합개발(주) 대표자 김응서,유영걸 (☎062)220-2500)

라. 설계자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김재석 (☎02)2047-3000),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세한 (☎02)3438-8000),
(주)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경 (☎062)574-6467)

마. 사업개요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재지구 A4
- 대지면적 : 26,585.0000㎡
- 연면적 : 103,603.8763㎡
-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지하3층, 지상25층) 및 부대·복리·근린생활시설
- 세대수 : 공동주택(아파트) 584세대
- 공사기간 : 2026. 03.09. ~ 2029. 03. 08.(36개월)
※ 전기공사기간(예정) : 2026. 05. 09.~2029. 03. 08.(34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2. 12.

바. 사업비

- 총사업비 : 294,055,609천원
- 대지비 : 79,349,382천원
- 총공사비 : 156,700,868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 / 부가가치세 미포함)
 - 1) 감리 대상 공사비 : 11,181,196천원
 - 2)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 : 145,519,672천원
 - ※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건축,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비용임.
 -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사. 감리대가 : 830,934,757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806,006,714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전체공정	[Blank]																																				2026.03.09.~2029.03.08. (36개월)										
전기공사	[Blank]																																				2026.05.09.~2029.03.08. (34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1. 7.(수) 09:00 ~ 2026. 1. 9.(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합니다.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 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감리대가' 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1. 9.(금) 14:00부터, 입찰집행관 PC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https://www.yeosu.go.kr/>, 열린시정>여수소식>고시공고)에 결과가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 12.(월) 09:00 ~ 2026. 1. 1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날인 필)
 -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 사실확인 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 서류를 PDF로 요청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 15.(목) 09:00 ~ 2026. 1. 19.(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다.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자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절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따라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사자원부고시 제2023-36호(2023. 3. 2.))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함.(단, 80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

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4](임감날인)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1.총괄표, 비교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4)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3]

5)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 8)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4) 교육: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1,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작업기법		구분		제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 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하. 착공 전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시행사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 까지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061-659-4179)로 문의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예정공정표 각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선정신청

(사업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1.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가. 지 역		1.5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5	다. 부실벌점		-5			
합 계							
<p>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 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 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평점은 당해업체가 기재하고, 평점산정근거를 비교란에 기재할 것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 감리원	(1) 책임 감리원 (가)등급	[25]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나)경력 및 실적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h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 3년이상</td> <td>3년미만</td> </tr> <tr>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8년이상</td> <td>8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1,200세대이상</td> <td>15년이상</td> <td>15년미만 12년이상</td> <td>12년미만 9년이상</td> <td>9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2</td> <td>19</td> <td>16</td> <td>13</td> </tr> </tbody> </table> <p>※[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 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1,200세대이상</td> </tr> </thead> <tbody> <tr> <td>년 수</td> <td>2년</td> <td>3년</td> <td>4년</td> </tr> </tbody> </table>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조 감리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14]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배점기준																																										
		(14)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th> <th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 <td>3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 colspan="2">2년미만</td> </tr> <tr> <td></td> <td>14</td> <td>12</td> <td colspan="2">10</td> </tr> <tr> <td>1,200세대이상</td>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4</td> <td>12</td> <td>10</td> <td>8</td> </tr> </tbody> </table> <p>※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비상주 감리원 (가) 등급	[11]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점기준											
	(나) 경력 및 실적	(9)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10년이상</td> <td>10년미만 7년이상</td> <td>7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점 수</td> <td>9</td> <td>7</td> <td>5</td> <td>3</td> </tr> </table> <p>※[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산출근거		(1) 등 급 :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 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점기준											
산출근거		○ 연면적 :	m ²	※ 산출근거자료-별첨4										
다. 신용도		10												
다.신용도	(1)입찰참가 제한, 영 업정지 (가)감리 업체 (나)참여 감리원	[7] (4) (3)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산출근거		(2) 참여감리원 :												

	(2)재정상태 건설도	[3]																			
	(가) 자본 비율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0</td> <td>0.85</td> <td>0.70</td> <td>0.55</td> <td>0.4</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나)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2.0</td> <td>1.7</td> <td>1.4</td> <td>1.1</td> <td>0.8</td> </tr> </table>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이하</td> <td>5년초과 10년이하</td> <td>10년초과 20년이하</td> </tr>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r> <td>전력신기술</td> <td>100%</td> <td>80%</td> <td>-</td> </tr> </table>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5</td> <td>3.0</td> <td>2.5</td> <td>2.0</td> </tr> </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3) 교육 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p>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p>												
		<p>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p>												
		<p>다. 교육실적</p>	<p>-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점</p> <p>-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점</p>											
마.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6)	<p>○ 상주감리원(6점)</p> <p>-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책임감리원</td> <td>보조감리원</td> </tr> <tr> <td>점 수</td> <td>4</td> <td>2</td> </tr> </table> <p>※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p>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2) 비상주 감리원	(4)	<p>○ 비상주감리원(4점)</p> <p>-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p> <p>-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6개소미만</td> <td>6개소</td> <td>7개소</td> <td>8개소</td> <td>9개소이상</td> </tr> <tr> <td>점 수</td> <td>4</td> <td>3</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p>※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p>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p>가. 상주감리원 :</p>												
		<p>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p>												
바.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5)	<p>○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tr> <td>교 체 빈 도 (%)</td> <td>10%미만</td> <td>10%이상 20%미만</td> <td>20%이상 30%미만</td> <td>3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2.5</td> <td>2</td> <td>1.5</td> <td>0</td> </tr> </table>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교 체 빈 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 참여 감리원	(2.5)	<p>○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p>※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p>												
		<p>가. 감리업체 : = %</p>												
		<p>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p>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 작업 기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소 계					
가점	(1) 지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 책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 부실벌점 :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여수시장 귀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 적 (최근 3년)	A ÷ 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 가. 결산서 작성사유 : _____
- 나. 결산서의 종류 : _____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_____
- 라. 기타 _____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_____
 주 소 : _____
 연락처 : _____
 공인회계사, 세무사 : _____ (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p>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p>위 감리원은 현재 ()월간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input type="checkbox"/>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시·도지사 <input type="checkbox"/></p>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책임 감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u>소계</u>				일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년		
합계				일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보조 감리 원							
	합계				일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업명	기간					
비상 주 감리 원							
	[부표3-1]제1호 가+나+다목 <u>소계</u>				일년		
	[부표3-1]제1호 라목(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년		
합계				일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아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연번	용역명	감리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여수시 공고 제 - 호
- 사업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각 협회에 통보하고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800세대 미만	30	70	$70-3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82.95%
1,200세대 미만	50	50	$50-3 \times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총사업비 산출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공사	8,770,823	8,770,823		-
		정보통신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공사	5,418,431			5,418,431
		소계	131,092,003	8,770,823	-	122,321,180
	일반관리비	13,528,866	1,273,372		12,255,494	
	이 윤	12,079,999	1,137,001		10,942,998	
	계	156,700,868	11,181,196	-	145,519,672	
간접비	설계비	2,778,928		2,778,928		
	감리비	4,150,000		4,150,000		
	일반분양시설경비	8,363,803		8,363,803		
	분담금 및 부담금	9,398,500		9,398,500		
	보상비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33,254,269		33,254,269		
	계	57,945,500	-	57,945,500	-	
대지비	79,349,382		79,349,382			
부가가치세액	59,859		59,859			
총사업비 계	294,055,609	11,181,196	137,354,741	145,519,672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 천원)

구 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13개공사)		12,168,508			12,168,508	
	건축(23개공사)		91,274,174			91,274,174	
	기계설비(9개공사)		10,695,220			10,695,220	
	전기 (15개공사)	배관공사	1,224,930	1,224,930			
		배선공사	194,451	194,451			
		외등설치공사	201,001	201,001			
		간선공사	2,665,249	2,665,249			
		분,배전반공사	1,134,553	1,134,553			
		수변전설비공사	348,775	348,775			
		트레이설치공사	176,818	176,818			
		레이스웨이설치공사	605,000	605,000			
		발전기설비공사	1,961,401	1,961,401			
		고압인입공사	80,724	80,724			
		기계실동력설비공사	16,309	16,309			
		배선기구설치공사	24,742	24,742			
		조명기구설치공사	60,651	60,651			
		접지공사	1,207	1,207			
		피뢰설비공사	75,012	75,012			
	소계		8,770,823	8,770,823		-	-
	정보통신(13개공사)		2,764,847				2,764,847
	소방설비(2개공사)		5,418,431				5,418,431
	일반관리비		13,528,866	1,273,372			12,255,494
	이 윤		12,079,999	1,137,001			10,942,998
총 공사비		156,700,868	11,181,196		-	145,519,672	

예 정 공 정 표(감리배치계획)

■ 현 장 명 : 여수 소재지구 A-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예정일 : 2026년 03월 09일
 ■ 공 사 기 간 : 2026년 03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6개월)
 ■ 전 기 공 사 기 간 : 2026년 05월 09일 ~ 2029년 03월 08일 (34개월)

년도	2026												2027												2028												2029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전체공정																																									
전기공사																																									

2026.03.09.~2029.03.08.
(36개월)

2026.05.09.~2029.03.08.
(34개월)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제2항제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12. 31. ~ 2026. 1. 16.(17일간)
2.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성명	주 소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액	부과통지서 납부기한
심*식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 30*동 ***호, (화장동, 주공*단지아파트)	어선 검사 신청 지연	1,000,000원	2026. 2. 2.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남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19)

4. 기 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증가산금 가산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소유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응천동 1821-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174번)사업
 - 나. 명 칭 : 응천 에듀파크 공영주차장 조성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193.8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22. 2.17.
 - 나. 공사완료일: 2024. 4.1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주차차량과(☎061-659-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덕충동 2036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노외주차장 107)사업
 - 나. 명 칭: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A=1,847.4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20.11.12.
 - 나. 공사완료일: 2024. 4. 8.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주차차량과(☎061-659-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어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어업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어업권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 나. 사업위치: 여수시 읍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 다. 사업량: 호안 축조 7.5km / 420만㎡
- 라. 사업기간: 2022. 10. ~ 2027. 10.
- 마.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장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여수시

2. 보상대상: 불입 세부내역 참조 ※보상 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며, 일반인은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에서 실시한 어업피해조사용역 결과 피해 범위에 포함된 어업권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이 있는 자로서 어업행위를 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 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1. 2. ~ 1. 16.(15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여수시 공영개발과 보상팀
 - 주소: (우)59693 여수시 웅천11길 7, 공영개발과(웅천동)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보상대상 어업권 조서는 여수시 누리집(www.yeosu.go.kr)에 게재하고, 우리 시 공영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ljsmg21@korea.kr), 팩스(061-659-5850)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소유권 이전

나. 보상시기: 2026년 2월 이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

다. 보상방법: 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계좌 입금(현금보상)

- 구체적인 협의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라.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가격은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어업손실보상 약정서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5. 기 타

- 추후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시기·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별도 문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어업권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어업보상 대상자 중 어업실적 및 피해범위내 조업사실이 없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어업권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업보상 대상자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수시 공영개발과 보상팀(☎061-659-4589)으로 문의바랍니다.
- 열람기간 내 공휴일(토·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는 열람하지 않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서동 산12-1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5호선)사업
- 나. 명 칭: 여서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4,706.2m²
- 나. 규 모: L=380m, B=14.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24. 9.12.
- 나. 공사완료일: 2025.10.2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10호

여수시 도서관운영과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서관법」 제34조 및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모집기간 : 2026. 1. 2. ~ 1. 26.(25일간)
2. 모집인원 : 7명
3. 위원회 임기 및 주요기능(심의)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1회 가능
 - 주요기능
 - 도서관 운영 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이버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격조건
 - 독서진흥 및 사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지원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5.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6. 선정기준

-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7.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2. 3.(선정위원 개별 통보)

8.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여수시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정책팀(☎ 061-659-285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신청
 - 직접방문 : 여수시이순신도서관(사무실)
 - 우편접수 : 우)59693 전남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여수시이순신도서관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boranararo@korea.kr
 - 팩스 : 061-659-5856/ ※ 팩스 송신 후 전화(659-2855)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신청서 양식은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http://yslib.yeosu.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9.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 신청서 1부(별첨 1)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별첨 2)
- 이력서 1부(별첨 3)
- 자격(경력)증명서 사본 1부

10.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659-285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여수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원 위촉 시부터 ~ 위원 해촉 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회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여수시	성명, 소속, 직위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2년 (위원 해촉 시까지)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첨3)

사 진	이 력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일반재산[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일괄 매각 입찰 공고

우리 시 일반재산(제3송학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비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 가. 건명 : 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매각
- 나. 매각대상 물건 : 제3송학호의 선체, 기관, 장비 등 6점(붙임 목록 참조)
 - 보관 장소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21-20(송도선착장)
- 다. 예정가격 : 금37,673,100원(금삼천칠백육십칠만삼천일백원) *최초 예정가격 : 41,859,000원
-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2026. 1. 5.(월) 09:00 ~ 2026. 1. 12.(월) 18:00
- 마. 개찰 일시 : 2026. 1. 13.(화) 10:00
- 바. 개찰 장소 :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주소 <http://www.onbid.co.kr>

-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라.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나.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청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유효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결정)
- 나. 동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온비드” 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므로 별도의 입찰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 (☎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 나. 낙찰자는 매매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일시불, 1천만원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 다. 구비서류
 - 1)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 3)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
 - 4) 공 통 : 계약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 라. 계약체결 장소: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섬지원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4층)
- 마.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부터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가 대상어선을 인수하면 즉시 분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인수지연 시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분리보관 -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

10. 기타 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물품 실물확인을 희망할 경우 여주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3)에 사전연락 요망**
- 라. 천재지변 또는 선박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선박의 인수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이나 행정 또는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 프로그램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영 담당자(☎1588-5321)로 문의하시고,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여주시청 섬발전지원과(☎061-659-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붙임 1. 매매계약서 1부.
2. 기관·장비 인수인계서 1부.
3. 기관·장비 매각 명세표 1부. 끝.

제3송학호 선박 등 매매계약서

□ 물품의 표시 : 제3송학호 선박·장비 등 (별지목록)

위 선박·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여수시장 : 이하 “甲”이라한다)과 매수인(이하 “乙”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기관·장비 등의 매매에 있어 “乙”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납한다.

매매대금	합	금	원(금	원)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금회입금액	금	원(금	원)

- 제1조 : “乙”은 선박의 인수에 있어 “甲”의 일정에 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조 : 계약 후 “乙”은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조 : “乙”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조 : “乙”은 선박 매각 공고내용에 기재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이 교체,분실, 선박소유자 임의매각을 제외 하고는 인수·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있으며, 변상조치는 불가함)
- 제5조 : 선박 등의 인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乙”이 부담한다.
- 제6조 : “乙”은 기관·장비 등의 인수 후에 기관·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乙”이 책임을 지며 “甲”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 제7조 : “乙”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甲”의 해석에 따른다.
- 제8조 : “乙”은 인수·인계된 물건에 대하여 인수·인계 즉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나 방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 “甲”과 “乙”은 미 인수·인계 물건에 대하여는 입찰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매수인 (乙)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매도인 (甲)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성명(법인명) : 여수시장	(인)

선박 등 등 인수인계서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 완료 하였는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시 / 장소 : 2025. . . /

인수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 : - -)		
인계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 : - -)		
기관 및 주요 장비 등	품 목 명	수 량	제 작 연 도	
	별 첨 목 록 과 같 음			

제3송학호 선체 및 기관 등 명세

연번	품명	규격 · 형식	수량	평가금액(원)		평균가격(원)
				하나감정	대상감정	
1	선체	종류: 기선 선질: FRP 총톤수 9.77G/T	1기	34,781,200	33,901,900	34,341,550
2	주기관 (Main Engine)	Diesel 230PS	1기	5,290,000	5,750,000	5,520,000
3	플로터 (GPS Plotter)	NF100	1대	632,000	632,000	632,000
4	무전기	STR-6000B	1대	173,000	190,000	181,500
5	레이더	Type : MRD-104 SERIAL NO : 10402939	1대	1,100,000	1,190,000	1,145,000
6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Type : TJT-DCP-4.8 총중량 : 7.7kg	2대	40,000	38,000	39,000
	계			42,016,200	41,701,900	41,859,050
					절사	41,859,000

공유재산[섬섬여수3호]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입찰 공고

우리 시 공유재산(섬섬여수3호)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비 등 일체를 매각하고자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입찰】

- 가. 건명 : 섬섬여수3호 기관, 장비 등 매각
- 나. 매각대상 물건 : 섬섬여수3호의 기관, 장비 등 총 10점(붙임 목록 참조)
 - 기관·전자장비 보관 장소 :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905-2번지 앞 운두도 선착장
 - 선체는 폐선(해체)처리 예정으로 매각대상 물건 아님
 - 매각 대상 물품은 우리 시와 계약한 선박해체처리 업자와 협의 후 인수한다.
(도난 우려가 있는 전자장비, 의장품 등에 대해서는 대상선박 인수와 동시에 확인 후 해체 처리 업자와 협의하에 현장에서 전자장비, 의장품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인수 할 수 있다.)
- 다. 예정가격 : 금6,416,400원(금육백사십일만육천사백원) *최초 예정가격 : 10,694,000원
-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일시: 2026. 1. 5.(월) 09:00 ~ 2026. 1. 12.(월) 18:00
- 마. 개찰 일시 : 2026. 1. 13.(화) 10:00
- 바. 개찰 장소 :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 후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찰 방법 :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bid.co.kr>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라.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금(분할납부 불가)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유효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도 낙찰결정)

나. 동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이면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온비드” 시스템의 “자동결정”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되므로 별도의 입찰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1588-5321)에게 문의하시고
-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 및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께서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 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 [구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에 게재합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 나. 낙찰자는 매매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일시불, 1천만원 초과 시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 다. 구비서류
 - 1)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 3)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
 - 4) 공 통 : 계약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 라. 계약체결 장소: 여수시청 성발전지원과 섬지원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4층)
- 마.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부터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가 대상어선을 인수하면 즉시 분리,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인수지연 시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분리보관 -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낙찰자 책임)

10. 기타 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기관·장비 등의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 물건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물품 실물확인을 희망할 경우 여수시 섬발전지원과(☎061-659-3993)에 사전연락 요망**

- 라. 낙찰자는 매각물건 해체(분리) 시에 반드시 여수시(선박소유자), 선박해체업체와 사전협의 하에 계약된 장소에서 해체(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해체(분리)작업 시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 ※ **도난 우려가 있는 장비는 선박해체업체와 협의 하에 즉시 선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마. 천재지변 또는 선박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선박의 인수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 낙찰자는 낙찰된 기관·장비 등을 선박으로부터의 해체(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운반 시 발생하는 사고 및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이나 행정 또는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 프로그램 및 입찰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용 담당자(☎1588-5321)로 문의하시고,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061-659-3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기타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붙임 1. 매매계약서 1부.
 2. 기관·장비 인수인계서 1부.
 3. 기관·장비 매각 명세표 1부. 끝.

섬섬여수3호 기관·장비 등 매매계약서

물품의 표시 : 섬섬여수3호 기관·장비 등 (별지목록)

위 선박의 기관·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여수시장 : 이하 “甲”이라한다)과 매수인(이하 “乙”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기관·장비 등의 매매에 있어 “乙”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납한다.

매매대금	합 계 금	원(금	원)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금회입금액 금	원(금	원)

제2조 : 기관·장비 등의 인수·인계는 “甲”과 계약된 해체처리업체와 상의하여 선정된 해체장소에서 실시한다.

제3조 : “甲”의 해체처리업체 선정지연 등 기타의 사유로 선박의 기관·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乙”은 선박의 기관·장비 등의 인수에 있어 “甲”의 일정 및 수량에 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 계약 후 “乙”은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 “乙”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乙”이 “甲”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 “乙”은 기관·장비 등의 매각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기관·장비 등이 교체, 분실, 선박소유자 임의매각을 제외 하고는 인수·인계 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乙”에게 있으며, 변상조치는 불가함)

제8조 : 기관·장비 등의 인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乙”이 부담한다.

제9조 : “乙”은 기관·장비 등의 인수 후에 기관·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乙”이 책임을 지며 “甲”에게 일체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 : “乙”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甲”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 “乙”은 인수·인계된 물건에 대하여 인수·인계 즉시 임의 처리할 수 있으나 방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 “甲”과 “乙”은 미 인수·인계 물건에 대하여는 입찰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甲”과 “乙”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매수인 (乙)	주소 : _____	성명(법인명) : _____	(인)
------------	------------	-----------------	-----

매도인 (甲)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성명(법인명) : 여수시장	(인)
------------	------------------------	----------------	-----

기관 및 장비 등 인수인계서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 완료 하였는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시 / 장소 : 2026. . . /

인수자 (매입업체)	성 명	(인)		
	주 소	(전화 : - -)		
인계자 (해체업체)	성 명	(인)		
	주 소	(전화 : - -)		
기관 및 주요 장비 등	품 목 명	수 량	제 작 연 도	
	별 첨 목 록 과 같 음			

어선(어선·어구 등 시설물) 감정평가 집계표

연번	선명	소유자	평가금액(원)		산술평균가격(원)	비고
			하나감정	나라감정		
1	섬섬여수3호	섬발전지원과	10,505,000	10,883,000	10,694,000	2025. 9. 평가
합 계			10,505,000	10,883,000	10,694,000	

연번	품명	규격·형식	제작소	제작일자	수량	평가금액(원)			비고
						하나감정	삼일감정	산술평균	
1	주기관 (Main Engine)	1)디젤 6기통 360PS 2)동력전달장치 3)축계장치 4)Std' Acc's	두산 인프라코어	미상	1 식	7,560,000	7,920,000	7,740,000	
2	조타기 (Steering System)	Hyd' Type	국산	미상	1 식	340,000	352,000	346,000	
3	레이다 (Radar)	RA770UA	Anritsu	2003.05.	1 대	526,000	526,000	526,000	
4	플로터 (GPS Plotter)	HD-1200C	해양	미상	1 대	879,000	879,000	879,000	
5	무전기 (VHF Transceiver)	STR-6000B	삼영	2015.12.	1 대	251,000	263,000	257,000	
6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HIS-770B	해양	미상	1 대	176,000	176,000	176,000	
7	통합화재경보기	SIA-800 기타 부대시설	삼영 이에스티	미상	1 식	272,000	272,000	272,000	
8	사이드롤러 (Side Roller)	Hyd' Type Roll × 2ea	미상	미상	1 식	277,000	264,000	270,500	
9	전기시설 (Electric Equipment)	1)Switch Board 2)Std' Acc's	미상	미상	1 식	136,000	136,000	136,000	
10	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호남기계	2023. 4.	1 대	88,000	95,000	91,500	
합 계						10,505,000	10,883,000	10,694,000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367	2026-1	마을어업	16	돌산 평사	2016.02.06. 2026.02.05.	2026.02.06. 2036.02.05.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평사어촌계	
10367-1	2026-2	마을어업	15.5	돌산 평사	2016.02.06. 2026.02.05.	2026.02.06. 2036.02.05.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도실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6. 01. 02.

여 수 시 장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 행정예고

2025년 제4차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 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소호로 295, 디오션리조트 가속차로	편측(15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2	여순로 416, 쏘카 주변	편측(28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3	이순신광장로 228~자산공원길 6-1, 자산교 아랫길	편측(52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4	강남8길 20, 돌산 청솔102동 앞	편측(21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5	광무3길 14~광무3길 36-1	편측(227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6	묘도7길 110, 묘도전망대	편측(312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7	공화북2길 4(국민연금공단~원도심권 노인복지관)	양측(48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8	여문문화2길 4, 새순한방병원 뒷길	양측(8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6. 1. 27.
9	장성마을길 18(카클리닉)~장성마을길 18-8(목양교회)	편측(94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42m)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52m)	2026. 1. 27.

10	교동시장5길 8(고추직매장)→충무로 25-21(대림전기)	60m	일방통행 지정	2026. 1. 27.
----	------------------------------------	-----	---------	--------------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6. 1. 5.(월) ~ 1. 26.(월), 21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 1. 5.(월) ~ 1. 26.(월) 18:00, 21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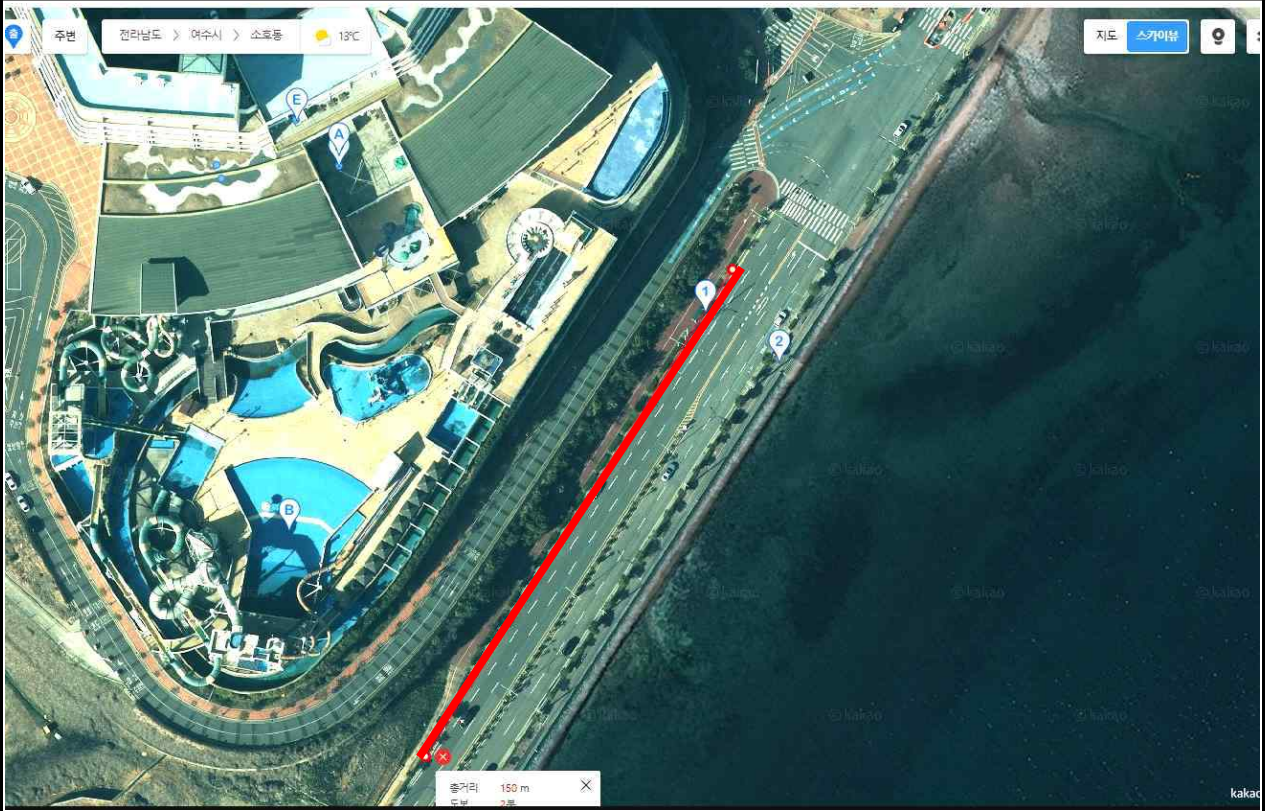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과 지정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① 소호로 295, 디오션리조트 가속차로 (편측 L=15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② 여순로 416, 쏘카 주변 (편측 L=28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③ 이순신광장로 228~자산공원길 6-1, 자산교 아랫길(편측 L=52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④ 돌산읍 우두리 1139 아파트 방면(L=21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⑤ 광무3길 14~광무3길 36-1 (편측 L=227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㉔ 묘도7길 110, 묘도전망대 (편측 L=312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⑦ 공화북2길 4(국민연금공단~원도심권 노인복지관)(양측 L=48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⑧ 여문문화2길 4, 새순한방병원 뒷길(양측 L=8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⑨ 장성마을길 18(카클리닉)~장성마을길 18-8(목양교회)(편측 L=94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⑩ 교동시장5길 8(고추직매장)→충무로 25-21(대림전기) [일방통행 6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 2] 의견 제출서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여수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수거북선축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진위원 공개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모 집 명 :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나. 모집인원 : 15명 이내

다. 모집기간 : 2026. 1. 2.(금) ~ 1. 16.(금) 14일간

라. 임 기 :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

- 여수거북선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여수거북선축제를 주관, 전반적인 행사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여수거북선축제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등

마. 모집대상(자격요건)

- 축제 기획 및 행사 운영, 이순신장군 및 거북선 등 역사,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 시민 단체 · 지역 청년 등

바. 선정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사. 선정기준

- 축제 기획 및 행사 운영, 이순신장군 및 거북선 등 역사,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 축제 전문성, 수행 능력, 지역사회 이해도 및 기여도, 추진위원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위원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내부 거래 금지

2.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 2.(금) ~ 1. 16.(금) 18:00까지
- 제출처 :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43)
 - 메일 : ymaumi@korea.kr
 - 주소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79, 3층 문화예술과(허재영정형외과 건물 3층)
- 제출방법 : 방문, 메일,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내려받기 : 시 홈페이지

3.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 659-474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 . .
본인은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1월 일			
작성 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여수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 경력, 자격, 기타 활동상황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 추진위원회 운영의 기초자료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위원 활동 종료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여수거북선축제추진위원회 참여는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여수시 공고 제2026-34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5.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 5 ~ 2026. 1. 18. (14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오** 등 82건)
3. 공고내용
 - 가. 귀하의 소유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고정, 이동식) 또는 안전신문고로 단속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여수시 주차차량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86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35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 5 ~ 2026. 1. 18. (14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김** 등 93건)
3. 공고내용

□ 부과 고지서 반송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 고지서 반송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6-36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53-13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 1. 5.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53-13번지
2. 도로면적 : 8m²
3. 도로길이 : 7.5m
4. 도 로 폭 : 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8	8	
화정면 백야리	253-13	답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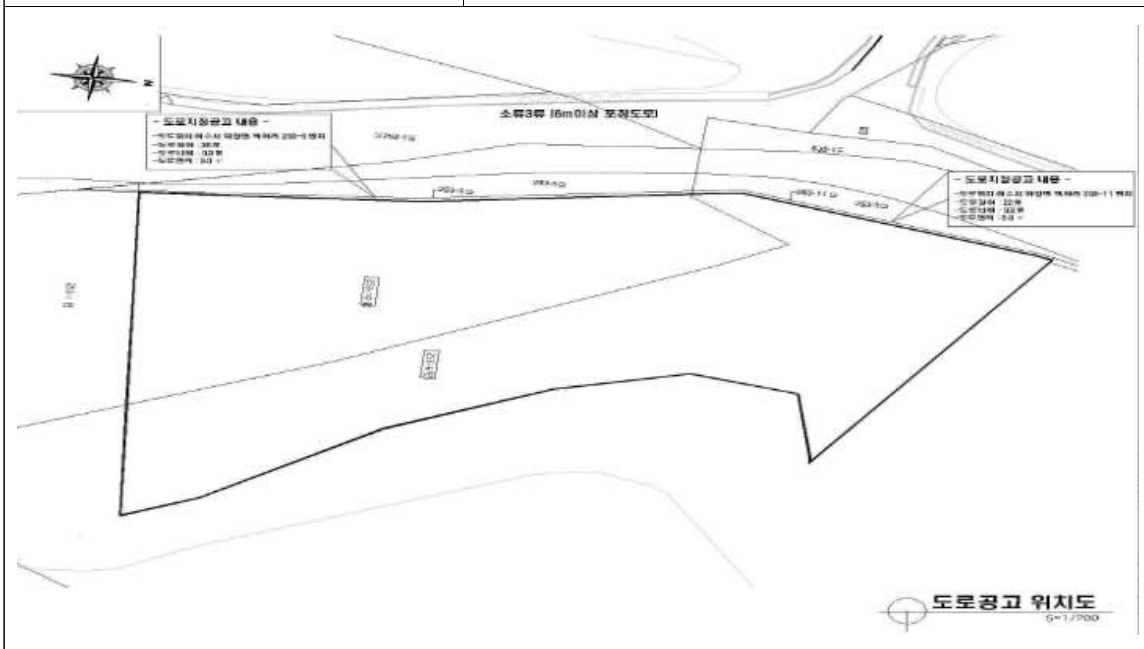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치도



현황도



[여수시 공고 제2026-37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53-6번지 외 1필지(253-10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6. 1. 5.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253-5번지 외 1필지(253-11번지)
2. 도로면적 : 14m²
3. 도로길이 : 58m
4. 도 로 폭 : 0.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4	14	
화정면 백야리	253-5	답	9	9	
화정면 백야리	253-11	답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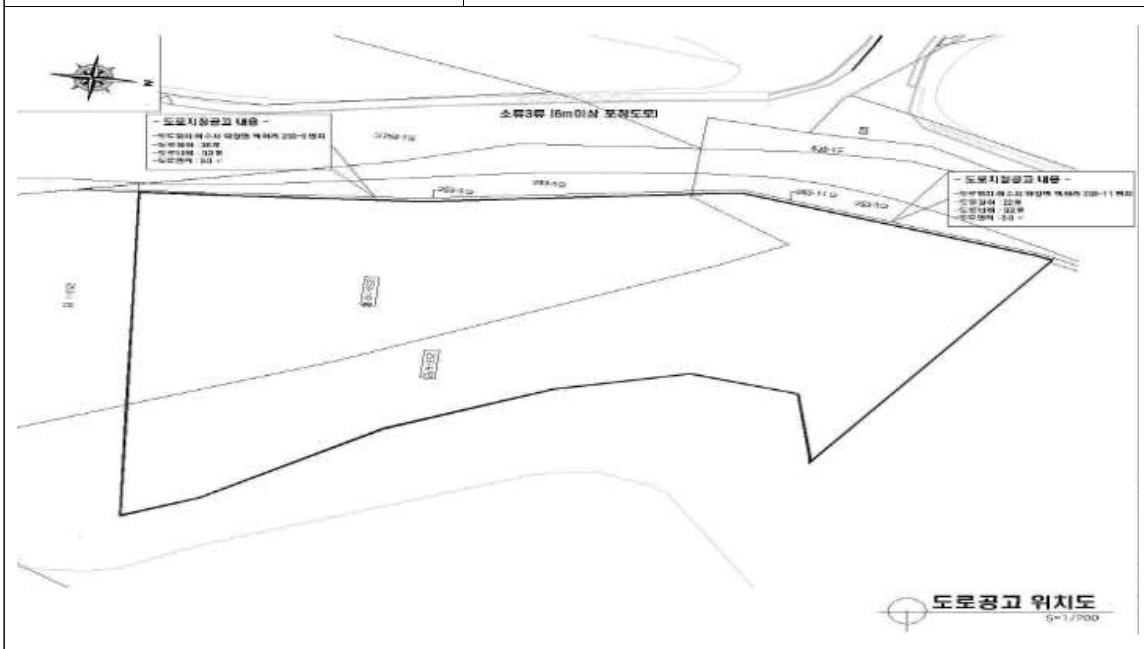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치도



현황도



화정면 이장 모집 재공고(2차)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화정면 자봉마을 이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화정면 5개마을 이장

* 월향, 여석, 모전, 제도, 규포

2. 공고기간 : '25. 12. 31.(수) ~ '25. 1. 7.(수) (7일간)

3. 신청방법: 화정면사무소 방문·신청

4.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5. 자격요건

가. 지역 주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나. 공고일 현재 관할구역 통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포함)에서 선출 및 추천된 자

다. 주민총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6. 이장의 임무(「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가. 반장 또는 반원의 구성 및 운영

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다.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라.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배부

마.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등

7. 신청제외자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제출서류

가. 이장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등록초본

다. 이력서,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추천서의 경우 주민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9. 제출처 및 문의전화 : 화정면사무소 총무팀 김소리(☎659-1229)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이장 임명을 취소합니다

11. 접수처 및 기타문의: 화정면사무소(☎061-659-1229)

2025년 12월 31일

화 정 면 장